주요국의 소비세제도 (Ⅰ)

– 부가가치세

영국 편

박 정 수

2019.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주요국의 소비세제도 (Ⅰ)

– 부가가치세

영국 편

박 정 수

2019.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서 언

〈주요국의 소비세제도〉는 〈주요국의 소득세제도〉에 못지않게 연구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많은 분야 중에 하나이다. 특히 최근 주요국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소비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주요국의 소비세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는 정책입안자와 연구자에게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국의 소비세제도』의 전체 구성은 제1권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제도, 제2권 주요국의 개별소비세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서 제1권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우선 발간하고,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개별소비세제도는 추후에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제도는 분량이 방대하여 국가별로 분권하되 전 6권 세트 형태로 출판한다.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및 유럽연합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유럽형 부가가치세와 다른 형태의 판매세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대신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근간이 되는 유럽연합을 추가하였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주요국의 조세제도』와는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별 부가가치세제도를 소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및 통계자료도 제시하였다. 또한, 부록에 개별 국가의 부가가치세법 조문 목차를 수록하여 연구자들에게 해당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도 높였다. 다만, 조세제도 자체가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가장 최신의 내용을 담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주요국의 소비세제도는 최소한의 길라잡이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개별 국가의 최신 내용을 포함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OECD 홈페이지, 각국의 국세청 홈페이지와 주요 출판물 및 관련 법령정보를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무열 초빙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영국 편은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 일본 편은 요코하마시립대 국중호 교수, 호주 편은 건양대 최정희 교수, 프랑스 편은 강남대 안창남 교수와 손승연 프랑스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집필하였고, 유럽연합 편은 강남대 안창남 교수가 집필하였으며, 독일 편은 본인과 독일 세법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현대자동차 유럽본부 이유향 세무팀장이 공동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보고서 작성과정 중에 있었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서 감수 및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의 교정과 편집을 도맡아주고 회의를 준비해준 권선정 선임연구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2019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목 차

Ⅰ. 부가가치세 개관 ····· 1
1. 부가가치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 ····· 5
2.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 ····· 12

Ⅱ. 납세의무자 ····· 19
1. 납세의무자의 개념 ····· 21
2. 사업자의 범위 ····· 22
3. 사업자의 등록 ····· 24

Ⅲ. 과세거래 ····· 37
1. 재화의 공급 ····· 39
2. 서비스의 공급 ····· 39
3. 기타 ····· 40

Ⅳ. 과세표준 ····· 45
1.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 47
2.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47
3. 기타(VAT margin schemes) ····· 48

Ⅴ. 세율과 세액의 계산 ····· 49
1. 기본세율구조 ····· 51
2. 매입세액 공제 ····· 55
3. 의제매입세액 공제 ····· 56
4.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 58

Ⅵ. 영세율과 면세제도 ····· 59
1. 영세율 ····· 61
2. 면세제도 ····· 64

Ⅶ. 공급장소와 공급시기 ····· 67
1. 공급장소 ····· 69
2. 공급시기 ····· 77

Ⅷ. 부가가치세 행정 ····· 79
1. 과세기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지 ····· 81
2. 세금계산서 ····· 81
3. 기장 및 증빙작성 ····· 84
4. 신고와 납부 ····· 86
5. 과세절차 위임규정 ····· 88
6. 부가가치세 상환 ····· 89
7. 부가가치세 환급 ····· 89
8. 확인조사 ····· 92
9. 행정상 제재 및 형벌 ····· 93
10. 부가가치세 행정의 간소화 및 디지털화 ····· 95

Ⅸ. 시사점 ····· 105

참고문헌 ····· 109

〈부록〉 영국 부가가치세법 목차 ····· 111

표 목차

〈표 Ⅰ-1〉 영국의 구매세와 부가가치세 ····· 6
〈표 Ⅰ-2〉 영국의 부가가치세 연혁 ····· 7
〈표 Ⅰ-3〉 영국의 부가가치세 비율 사례 ····· 14
〈표 Ⅰ-4〉 특정 조건에서의 매출세액 ····· 15
〈표 Ⅰ-5〉 매출세액의 할인 ····· 16

〈표 Ⅱ-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활동 ····· 21
〈표 Ⅱ-2〉 영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범위(2019년 기준) ····· 23
〈표 Ⅱ-3〉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기준: 일반적인 사업(1990~2018) ····· 25
〈표 Ⅱ-4〉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기준: 해외판매 ····· 26
〈표 Ⅱ-5〉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기준: EU로부터의 물품 수입 및 취득 (1994~2018) ····· 26
〈표 Ⅱ-6〉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일(사업별) ····· 28
〈표 Ⅱ-7〉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 신청 시기(사례) ····· 29
〈표 Ⅱ-8〉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 취소기준(1999~2018) ····· 31
〈표 Ⅱ-9〉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 수(1980~2017) ····· 32
〈표 Ⅱ-10〉 사업유형별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 수(2010~2017) ····· 34

〈표 Ⅲ-1〉 서비스의 공급 ····· 40
〈표 Ⅲ-2〉 중고거래, 물물교환 및 채무상환 등의 거래 중 ····· 41
〈표 Ⅲ-3〉 할인 및 바우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 42

〈표 Ⅴ-1〉 영국의 부가가치세 세율(2019년 기준) ····· 51
〈표 Ⅴ-2〉 영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변화 ····· 52
〈표 Ⅴ-3〉 영국의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율(reduced rate) 변화 ····· 53
〈표 Ⅴ-4〉 감면세율 적용 품목 ····· 54
〈표 Ⅴ-5〉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55
〈표 Ⅴ-6〉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금액 ····· 56
〈표 Ⅴ-7〉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 57

〈표 Ⅵ-1〉 영세율 적용 품목 ····· 61
〈표 Ⅵ-2〉 품목별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스포츠, 레저, 문화 및 골동품) ····· 64

〈표 Ⅶ-1〉 서비스 유형별 공급장소 ····· 70
〈표 Ⅶ-2〉 토지 관련 서비스의 구분 ····· 72
〈표 Ⅶ-3〉 운송 수단 및 관련 서비스의 구분 ····· 73
〈표 Ⅶ-4〉 단기임대와 장기임대의 구분 ····· 73
〈표 Ⅶ-5〉 서비스 유형별 공급지(단기임대와 장기임대) ····· 74
〈표 Ⅶ-6〉 서비스 유형별 공급지(이벤트 관련 서비스) ····· 75
〈표 Ⅶ-7〉 서비스 유형별 공급지(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 76
〈표 Ⅶ-8〉 상품의 유형에 따른 공급시기 ····· 77

〈표 Ⅷ-1〉 세금계산서(invoice)에 포함되는 정보 ····· 83
〈표 Ⅷ-2〉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거래시기의 기록 ····· 85
〈표 Ⅷ-3〉 연간회계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납부마감일(2019년 기준) ····· 87
〈표 Ⅷ-4〉 VAT MOSS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납부마감일(2019년 기준) ····· 87
〈표 Ⅷ-5〉 등록기일 이후 등록 시 과태료율(2019년 기준) ····· 93
〈표 Ⅷ-6〉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마감일 경과 시 가중과세 ····· 95
〈표 Ⅷ-7〉 사업유형별 부가가치세 고정세율 ····· 97

그림 목차

[그림 Ⅰ-1] 영국의 세수구조: OECD 평균과 비교(2017년 기준)····· 10
[그림 Ⅰ-2] 영국의 부가가치세 세수 추이(1980~2017)····· 11
[그림 Ⅰ-3] GDP 대비 총세수 및 부가가치세 비율(1980~2017)····· 11

[그림 Ⅱ-1] 등록된 사업자 유형별 비중(2017)····· 33

Ⅰ. 부가가치세 개관

1. 부가가치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
2.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

Ⅰ. 부가가치세 개관

영국은 1972년 「재정법(Finance Act, 1972)」이 통과된 후 1973년 EU에 가입하면서 기존의 구매세(purchase tax)와 선별적 고용세(selective employment tax)를 대체하여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영국의 재화와 서비스 소비에 대한 간접세로, 보통 소비자가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의 모든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단계에 대하여 매출세액(Output VAT)을 부과함으로써, 공급자가 사업에 귀속되는 원가에 대하여 매입세액(Input VAT)과 동일한 금액으로 회계처리가 필요한 생산 부가가치세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친다. 결과적으로 상품의 생산 혹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단계의 구매자로부터 회수 가능하며, 그에 따라 최종소비에 대한 세금만이 남게 된다.

과세대상자인 기업은 매출세액을 매입세액과 상계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래인지, 할인된 이자율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있다. 기업에서 정부에 지불한 금액 이상으로 많은 부가가치세를 물품에 부과하는 경우 국세청(HM Revenue&Customs)에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하며, 반대로 국세청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많은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다.

Box 1 영국 부가가치세 과세

예를 들어 F, Y의 두 회사로 구성된 단순한 생산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사 F는 최종소비자로부터 30,000파운드의 매출을 올리며, B2B 판매는 하지 않는다. 회사 Y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B2B로만 판매하며, F는 Y로부터 10,000파운드에 구입한 투입물을 물품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20%일 때, 부가가치세의 책정은 어떻게 되는가?

1. 회사 Y는 F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2,000파운드(=10,000파운드의 20.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발생
2. 회사 F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30,000파운드의 매출에 대하여 6,000파운드(=30,000 파운드의 20.0%) 납부의무 발생
3. 회사 F가 Y로부터 구입한 상품에 대한 VAT, 즉, 자체 구매에 대하여 지불한 2,000파운드의 세금이 상쇄됨에 따라, 회사 F는 4,000파운드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존재
4. 두 회사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총금액은 2,000파운드+4,000파운드 = 총 6,000파운드이며, 이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의 금액(세금 제외)인 30,000파운드의 20%에 해당함

자료: Institute for Fiscal Studies(2010), p.292의 내용을 수정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임대 및 고용, 영업용 자산, 수수료, 기업 내 직원에게 판매된 상품,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한 기업용 상품, 물물교환 및 아르바이트, 선물 등 재화를 통해 거래되지 않는 비매품의 경우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EU 내 다른 회원국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 취득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1994년에 제정된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 1994)」과 1996년의 「재정법(Finance Act, 1996)」에 의거하여 EU의 부가가치세 지침(First VAT Directive, 2006)에 따라 시행된다. 영국의 부가가치세

법은 102개의 조항과 15개의 부칙으로 구성되며, 이 외에 1995년의 부가가치세 규정과 같은 많은 수의 2차 법령 및 재무부와 국세청이 발행한 시행령 등을 포함하는 일부 3차 법령들이 부가가치세 시행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재정법에서는 바우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및 협회 등 일부 과세대상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영국 부가가치세의 과세사례는 〈Box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

가. 부가가치세 도입 배경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입된 구매세(Purchase tax)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정부는 재정조달을 위하여 기존의 세목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세율 인상과 세원 발굴을 실시하였다. 전쟁 이후 영국 정부의 GDP 대비 세입 비중은 1939년 23.4%, 1945년에는 37.6%로 1900년의 9.0%와 2000년의 40.2%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Clark and Dilnot, 2002). 전쟁 시기 영국 정부는 보다 많은 수입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세율 인상 및 새로운 세원의 발굴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또한 당시 사회분위기에 따라 사치재의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되었으며, 이러한 상품에 대한 간접과세가 세원의 가시성, 가치 측정 및 과세 측면에서 다른 세목에 비하여 수월하였기 때문에 전쟁 이후의 시기를 기점으로 물품의 거래와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구매세(Purchase tax)가 1940년에 도입되었다.

구매세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매출세액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후 도입된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나, 매출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 소비내구재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현재의 부가가치세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구매세는 상품별 · 시기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일

부 세목에는 100% 이상의 세율이 책정되기도 하는 등 세제의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하였으며, 1973년 영국의 EU 가입 및 세제개혁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다.

표 Ⅰ-1 영국의 구매세와 부가가치세

구분	구매세 (Purchase tax)	→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
적용시기	1940~1973		1973~현재
과세대상	소비자가 지불하는 매출세액		소비자가 지불하는 매출세액
실제 과세표준	매출금액		각 생산 과정의 부가가치
주요 특성	소비내구재를 중심으로 과세하며, 각기 다른 세율 적용		대부분의 물품에 과세하며, 일부 품목은 면세

자료: John Whalley(1975), p. 143의 자료 일부를 저자가 재구성

1973년 영국이 EU(당시의 유럽공동체, EC)에 가입하기 이전인 1967년, EC가 부가가치세 지침(First VAT Directive)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각국의 거래세(turnover tax)를 1970년까지 부가가치세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가가치세는 EU 회원국 공통의 일반소비세로 채택되었다(한국법제연구원, 2002; 한국조세연구원, 2011). 이는 회원국 간 공동시장의 형성을 저해하는 국가별 거래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하여 조세를 일치시키기(tax harmonization) 위해서였다. 영국 또한 EU에 가입하면서 EU의 조세제도를 자국의 세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1973년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다.

나. 주요 연혁 및 변천과정

1) 주요 연혁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1940년부터 1973년까지 운영되던 구매세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구매세는 세계대전 이후 사치재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1940년부터 적용된 세제로, 거래 물품의 사치스러운 수준(luxurious level)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세금이다. 구매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판매시점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제조 혹은 유통단계에 부과된 세금으로, 도입 초기 도매업자에 대하여 34%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이후 1942년에는 적용하는 세율을 66%로 인상하고, 1943년에는 100%까지 인상하였다가 1946년에는 다시 34% 인하하는 등 세율이 급격하게 변동함에 따라 적정 수준의 구매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1971년 의회에서 제기되었다. 이후 1973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까지 구매세의 세율은 물품에 따라 13%, 22%, 55%로 적용되었다.

표 Ⅰ-2 영국의 부가가치세 연혁

적용 연도	운영 세목	표준 세율	고 세율	경감 세율	내용
1940 ~ 1973	구매세		-	-	• 물품의 사치스러운 수준(luxurious level)에 따라 다른 요율로 부과됨 • 소매점의 판매시점이 아닌 제조 혹은 유통단계에 부과됨 • 도입 초기에는 도매업자에 대하여 34%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942년에는 세율을 66%로 인상하였으며, 1943년에는 100%로 인상되었다가 1946년에 다시 34%로 인하하였음 • 1973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까지 구매세의 세율이 물품에 따라 13%, 22%, 55%로 적용되었음

〈표 Ⅰ-2〉의 계속

적용 연도	운영 세목	표준 세율	고 세율	경감 세율	내용
1973	부가 가치세	10%	-	-	부가가치세 도입 1973년 EU 가입 및 세제개혁에 따른 결과로 부가가치세 도입
1974		8%	25	-	세율 인하
1975		8%	25	-	일부 사치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luxury rate'에 해당하는 25%의 '고세율(higher rate)'을 적용
1976 ~ 1978		8%	12.5	-	일부 과세대상에 대한 높은세율을 12.5%로 인하
1979 ~ 1990		15%	-	-	고세율을 없애고 표준세율로 통합하여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을 15%로 인상
1991 ~ 1993		17.5%	-	-	세율 인상 인두세(Community charge or Polltax)의 폐지로 인한 정부 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세율 인상
1994 ~ 1996		17.5%	-	8	감면세율의 도입
1997 ~ 2009		17.5%	-	5	감면세율 인하 간접세의 비율보다 직접세의 비율을 확대하고자 한 영국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결과
2009		15%	-	-	세율 인하
2010		17.5%	-	-	세율 인상
2011 ~ 2018		20%	-	-	세율 인상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vat-rates)의 자료를 저자가 재구성

1973년에 영국이 EC(EU의 전신)에 가입하면서, 회원국 간의 세제 일치 및 경제안정과 안정적인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세제개혁을 실시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1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974년에는 세율을 8%로 인하하고, 일부 과세대상에 한하여 25%의 고세율(higher rate)

을 적용하였다. 1976년부터 1978년까지 고세율을 12.5%로 인하하여 적용하였으나, 이후 1979년부터는 고세율을 없애고 표준세율로 통합하여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이 15%로 인상되었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 15%로 단일화된 표준세율을 적용하다가, 1991년 인두세(Community tax or Poll tax)의 폐지로 인한 정부 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세율을 17.5%로 인상하였다. 1994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일부 세목에 대하여 세율을 기존의 17.5%에서 8%로 인하하는 감면세율을 도입하였다. 이후 2년간 8%의 감면세율을 유지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세수 중 간접세의 비율보다 직접세의 비율을 확대하고자 한 영국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1997년에 감면세율을 기존의 8%에서 5%로 인하하였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0여년의 기간 동안 17.5%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2008년의 국제경제위기로 인하여 세율을 15%로 인하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는 세율을 다시 인상하여 2011년부터는 현행 부가가치세 세율과 동일하게 20%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1994년에 제정된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 1994)과 재정법(Finance Act 2019)에 근거하여 과세되며, 2005년 이전까지는 영국의 간접세무국(HM Customs and Excise)에서 운영하였으나. 2005년 영국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이 설립된 이후 국세청에서 운영 · 관리하고 있다.

2) 최근 현황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로 대표되는 일반소비세는 소득세와 함께 영국 세수의 주요 원천이다. 이러한 세수구조를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영국의 세수구조와 기타 OECD 회원국의 세수구조 간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과 영국의 세수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Ⅰ-1]과 같다. OECD 회원국의 경우 사회보장적립금, 즉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이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24%, 21%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의 경우 총세수에

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가장 높으며, 부가가치세가 21%의 비중을 보여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할 때 자산에 대한 세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소비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에 근접하지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은 높고 개별소비세의 세수 비중은 낮은 세수구조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Ⅰ-1 영국의 세수구조: OECD 평균과 비교(2017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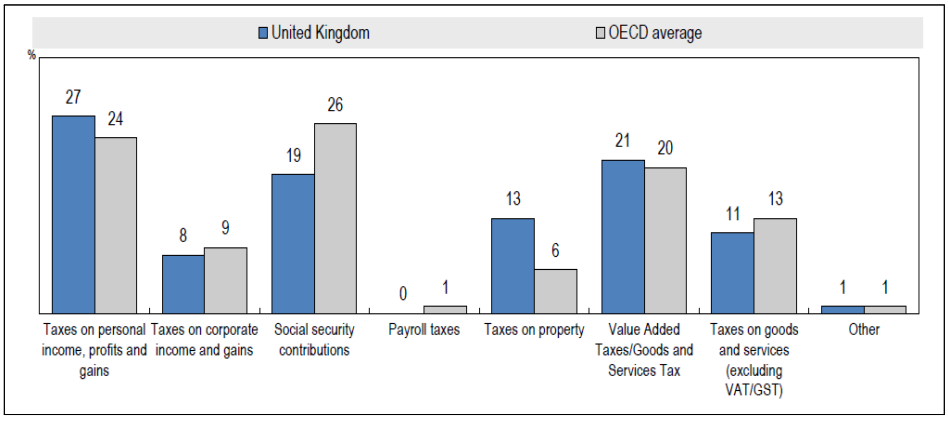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8 - the united kingdom

1980년 이후 부가가치세 세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Ⅰ-2]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총부가가치세 세수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거래를 통한 취득행위 등에 과세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 빈도가 높아질수록 세수 규모는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총세수 중 부가가치세 비율은 1980년대부터 2014년까지 16.1%에서 21.2%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회이익세의 도입 등 새로운 세제의 도입과 세제개편의 결과로 짐작된다.

그림 Ⅰ-2 영국의 부가가치세 세수 추이(1980~2017)

(단위: 십억파운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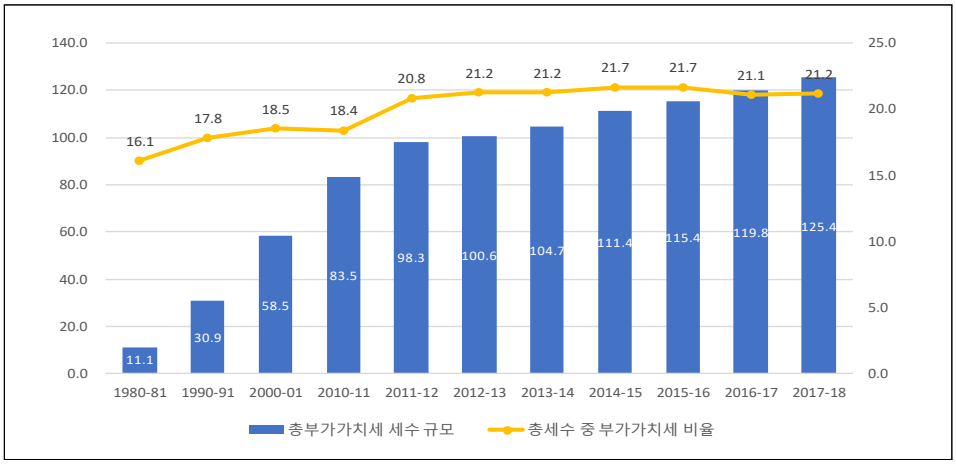

자료: HM, Revenue and Customs tax and NIC receipts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hm-revenue-customs-receipts_)

GDP 대비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1980년대 4.9%에서 2017년에는 6.9%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GDP 대비 총세수의 비중은 1980년의 33.4%에서 2017년에는 33.3%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거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Ⅰ-3 GDP 대비 총세수 및 부가가치세 비율(1980~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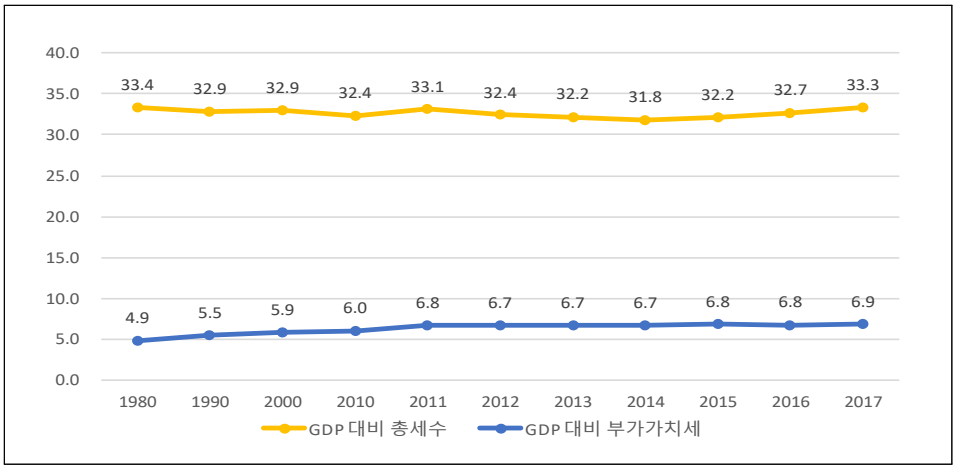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2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

가. 부가가치세 법령 체계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EU의 부가가치세 지침(First VAT Directive, 2006)에 따라 1994년에 제정된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 1994)」과 1996년의 「재정법(Finance Act, 1996)」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EU의 부가가치세 지침은 EU회원국 간의 자유경제에 기반한 경쟁조건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거래 및 소비세 관련 법령을 회원국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EU의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생산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가장 단순하고 중립적인 세제이다. EU의 부가가치세 지침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거래, 공급지, 영세율과 감면세율 등의 세제혜택, 조세행정과 관련한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부가가치세법은 102개의 조항과 15개의 부칙으로 구성되며, 이 외에 1995년의 부가가치세 규정과 같은 많은 수의 2차 법령 및 재무부와 국세청이 발행한 시행령 등을 포함하는 일부 3차 법령들이 부가가치세 시행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재정법에서는 바우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및 협회 등 일부 과세대상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의 유형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EU의 부가가치세 지침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총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구분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매입비용에 대한 완전공제가 허용되며, 과세표준 또한 이론적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출액과 일치한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소득형 · GNP

형 부가가치세와 달리 자본적 지출과 경상지출을 구분하거나, 자산의 내용연수 및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법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또한 자본설비의 구입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상품의 생산방법과 소비 및 저축 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립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제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 및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시행 국가에서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운영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영국 부가가치세의 세액 산정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는 세액공제법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법하에서는 사업자의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이 ① 매출세액을 결정하는 단계 ② 매입세액을 결정하는 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세액공제법을 통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상호 계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상의 투명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

1)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과세대상 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지급되는 부가가치세의 금액이다.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결정된 가격에 대하여 적절한 비율로 계산되며, 부가가치세 영수증에 이러한 별도의 금액이 표시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가격에서 매출세액을 계산할 경우, 부가가치세 비율(VAT fraction)을 계산하여 총판매가격 중에서 부가가치세액이 차지하는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Box 2 부가가치세 계산 사례

상품 판매 가격	부가가치세 세율	부가가치세 금액
£2.40	20%	£0.40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Guide(https://www.gov.uk/guidance/vat-guide-notice-700)

예를 들어 〈Box 2〉와 같이 상품판매 가격 중 부가가치세 금액을 계산한 경우, £0.40은 £2.40의 20%가 아닌 £2.40의 6분의 1에 해당한다. 즉, 상품판매가격인 £2.40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지불비용은

매출액×부가가치세 세율/(물품가액+부가가치세 세율)

이 된다. 이를 고려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세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비율(VAT fraction)은 〈표 Ⅰ-3〉과 같다.

표 Ⅰ-3 영국의 부가가치세 비율 사례

세율	5%	8%	10%	12.5%	15%	17.5%	20%	25%
부가가치세 비율	1/21	2/27	1/11	1/9	3/23	7/47	1/6	1/5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Guide(https://www.gov.uk/guidance/vat-guide-notice-700)

동일한 가격으로 복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포장된 재화 혹은 서비스, 우편 및 배송료, 임차, 조건부 매각 및 신용판매, 중고품, 서비스의 교환 및 물물교환, 선물 등 특정 조건하에서의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매출세액은 〈표 Ⅰ-4〉와 같이 계산된다.

표 Ⅰ-4 특정 조건에서의 매출세액

구분	내용
복수의 공급	사업자가 다양한 상품 혹은 서비스의 별도 공급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
포장된 재화 혹은 서비스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필요한 포장은 내용물인 상품의 일부로 취급되며, 그에 따라 고객은 포장된 내용물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지불함
우편 및 배송료	재화의 공급시 우편 혹은 배송과 관련한 추가요금은 별도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과되나, 상품공급을 위한 고객과의 계약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송절차 및 배송비가 존재하지 않음
임차, 조건부 매각 및 신용판매	임차거래는 상품 판매 계약에 의하여 달성되며,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지불이 이루어지고 계약 종료시 소유권이 이동함 조건부 매각은 가격을 분할하여 지불하는 상품의 판매를 의미하며, 이때 상품은 모든 대가가 지불되거나 고객이 다른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판매자에게 귀속됨 신용판매의 경우 거래 즉시 고객의 자산이 되지만, 상품의 가격이 분할되어 지불되는 판매를 의미함
중고품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세금 부과
서비스의 교환 물물교환 및 부품교환	사용이 어려운 물품과 재조정이 가능한 물품(수리된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단위에 대하여 청구하는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함 반면 서비스 불가능한 일회성 물품과 교환 가능한 물품의 교환, 특정 조건에서의 물품 교환은 부분교환으로 고려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함
상품의 샘플	제품의 실례로서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으로, 샘플제품이 사업목적에서 무료로 공급되는 경우가 아닌 주어진 물품을 샘플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
선물	일반적으로 선물에 해당하는 재화는 과세대상이며, 과세대상의 가격에 기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Guide(https://www.gov.uk/guidance/vat-guide-notice-700)

매출세액의 할인은 ① 무조건부 할인, ② 즉시 지불을 위한 할인, ③ 조건부 할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무조건부 할인은 고객에게 무조건부 할인을 제공하고 고객이 할인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은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시 지불을 위한 할인은 고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세액을 할인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액은 실제 지

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때 할인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조건부 할인은 고객에게 특정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이때 부가가치세 세액은 고객이 지불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고객이 할인을 하면 감소한 세액에 대하여 신용장을 발행함으로써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표 Ⅰ-5 매출세액의 할인

구분	사례
무조건부 할인	고객에게 무조건부 할인을 제공하고, 고객이 할인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세액은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즉시 지불을 위한 할인	고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세액을 할인해줄 경우, 세금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하지만 할인이 적용되었는지의 여부를 알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회계처리해야 하는 경우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
조건부 할인	고객에게 조건부 할인을 제공할 경우, 세액은 고객이 지불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고객이 할인을 하면 세액이 감소하므로 신용장을 발행하여 세액을 조정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Guide(https://www.gov.uk/guidance/vat-guide-notice-700)

2)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사업의 구매 및 지출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로, 영국 내에서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에게 공급된 재화 혹은 서비스, EU 외에서 수입한 재화 및 서비스, 다른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등록자로부터 획득한 물품, 영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간접비 및 연구개발비용 등의 모든 매입비용에 대하여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① 표준세율, 감면세율, 영세율에 의하여 거래된 재화 혹은 서비스, ② 타 국가에 수출되어 영국 부가가치세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영국에서 생산된 상품, ③ EU 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 혹은 EU 외 국가로의 재화 수출에 직접 관련된 서비스의 구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사업상의 거래 및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접대를 목적으로 제공된 재화 혹은 서비스의 경우 등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하다.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완료한 이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된다.

3) 부가가치세 등록 전에 구매한 물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 등록 전에 구매한 물품 혹은 서비스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이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자가 해당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금액을 등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거를 보유할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과 같이 처리 가능하다.

단, 부가가치세의 등록 전에 완전하게 소모된 물품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과세대상 물품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록 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금액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체의 부가가치세 등록 및 등록의무가 발생한 4년 이내에 재화가 공급되었거나 6개월 이내에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해당 재화 혹은 서비스가 현재 부가가치세 등록된 사업자에게 공급된 경우, 해당 사업자가 현재에도 해당 재화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경우 매입세액으로 처리 가능하다.

라. 소비지국 과세원칙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라 소비지국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에 근거하여 과세되고 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란 재화 혹은 서비스의 소비지에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재화와 외국에서 수입된 재화에 대하여 동일하게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국제거래와 관련한 EU의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라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지 관련 규정을 중심

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였다. 그에 따라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영국 내에서 재화 혹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며, EU 회원국 혹은 EU 외의 국가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급지 과세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이와 같이 영국의 부가가치세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범위, 즉 과세관할권의 결정에 있어 공급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Ⅱ.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개념
2. 사업자의 범위
3. 사업자의 등록

Ⅱ.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개념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도매 혹은 소매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한 모든 재화 혹은 서비스(taxable supplies)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 협회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①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활동인지, ② 영국 내에서 생산되는지, ③ 과세대상자가 생산하는지, ④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모든 사업 과정을 통하여 과세되는지의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거래는 영국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활동에는 영리단체의 재화 혹은 서비스의 판매, 임대 및 대여, 물물교환 등의 모든 거래와 비영리단체의 일부 재화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표 Ⅱ-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활동

- 재화 혹은 서비스의 판매
- 재화 혹은 서비스의 임대 및 대여
- 사업 자산의 판매
-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 고용자들에 대한 상품 판매(구내식당 등)
- 개인의 사용을 위한 상품
- 서비스 및 물물교환 거래
- 기부, 대가없는 자금지원 등 비영리활동을 제외한 자선단체의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Businesses and charging VAT (https://www.gov.uk/vat-businesses)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이 만료되는 시점에 공급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EU의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시점에 물품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그 외에 EU 회원국 외의 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관세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 조건하에서는 동일한 회사의 자회사 혹은 부서 등이 개별적으로 등록 가능하다.

2 사업자의 범위

영국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등록의무가 존재하거나 등록이 필요한 자로 구분되며, 과세대상자 중 회사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등록요건이 적용된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94조에 따른 '사업'은 '비영리적 생산까지 포함하는 지속적인 재화 및 서비스 공급 활동'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의 의무가 없는 자(과세대상 물품의 가치가 VAT 등록 한도액 미만인 경우)의 경우에도 ① 과세 가능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② 사업 과정에서 과세 가능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등록이 가능하다.

영리사업의 경우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모든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하며, 사업을 위하여 구매한 재화 혹은 서비스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비영리활동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처리 가능한 부가가치세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Ⅱ-2 영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범위(2019년 기준)

구분	사례
영리활동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법인의 활동 기부금 또는 기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법인, 협회 및 유사 단체의 활동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단체의 영리활동
비영리활동	무료 서비스 및 정보제공서비스 박물관, 공원 혹은 유적지의 유지 · 관리 종교적 · 정치적 견해의 홍보 보조금 혹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활동 자선단체의 비영리활동 지방정부 및 유사 정부단체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Businesses and charging VAT (https://www.gov.uk/vat-businesses)

이 밖에 공공기관 혹은 정부에 의해 생산되는 과세 물품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납세의무자가 생산한 물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정부 정책 혹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가 공급하거나 공급 가능한 종류의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물품으로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타 EU 회원국 혹은 외국국적의 납세의무자는 그가 거주하는 국가에 부가가치세 등록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의무자가 생산한 물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중도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 및 납세자격을 잃게 된다.

3 사업자의 등록

과세대상 사업자들은 대부분 매입세액(Input VAT)의 공제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을 실시하며, 사업자의 등록요청일 혹은 국세청 조사관들과의 합의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공급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세율이 0%인 경우, 등록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금액만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회수 가능한 투입 부가가치세 금액보다 클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등록 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 경우 그들이 지불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가. 등록기준

부가가치세 등록요건을 살펴보면, 과세대상 물품의 가치, 즉 사업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 Ⅱ-3〉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록을 위한 연간 매출액 기준은 1990년 이후 매년 변경되었으며, 2019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사업의 연간 매출액이 85,000파운드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의 등록대상이 된다.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연간, 혹은 매월 말 지난 12개월간 과세대상 물품액이 등록기준액을 초과한 이후 두 번째 달의 첫날까지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반면 영국 내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해외판매(distance selling)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이 매출액 기준 70,000파운드로 1993년 이래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해외거래의 등록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표 Ⅱ-3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기준: 일반적인 사업(1990~2018)

(단위: 파운드)

기간		매출액 기준
시작일	종료일	
1990.3	1991.3	25,400
1991.3	1992.3	35,000
1992.3	1993.3	36,600
1993.3	1993.11	37,600
1993.12	1994.11	45,000
1994.11	1995.11	46,000
1995.11	1996.11	47,000
1996.11	1997.11	48,000
1997.1	1998.3	49,000
1998.4	1999.3	50,000
1999.4	2000.3	51,000
2000.4	2001.3	52,000
2001.4	2002.4	54,000
2002.4	2003.4	55,000
2003.4	2004.4	56,000
2004.4	2005.4	58,000
2005.4	2006.4	60,000
2006.4	2007.4	61,000
2007.4	2008.4	64,000
2008.4	2009.4	67,000
2009.4	2010.4	68,000
2010.4	2011.4	70,000
2011.4	2012.4	73,000
2012.4	2013.4	77,000
2013.4	2014.4	79,000
2014.4	2015.4	81,000
2015.4	2016.4	82,000
2016.4	2017.4	83,000
2017.4	2018.4	85,000
2018.4	2019.4	85,000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UK VAT Notice 700/1:supplemen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at-notice-7001-should-i-be-registered-for-vat/vat-notice-7001-supplement--2)

표 Ⅱ-4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기준: 해외판매

(단위: 파운드)

기간		매출액 기준
시작일	종료일	
1993.1	~	70,000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UK VAT Notice 700/1:supplemen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at-notice-7001-should-i-be-registered-for-vat/vat-notice-7001-supplement--2)

영국 외 EU 회원국으로부터 재화 혹은 서비스를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 영국 내에서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영국 외 EU 회원국으로부터 재화 혹은 서비스를 수입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등록 매출액 기준은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으며, 2018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영국 내 재화 혹은 서비스 생산 시 기준인 85,000파운드와 동일하다.

표 Ⅱ-5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기준: EU로부터의 물품 수입 및 취득(1994~2018)

(단위: 파운드)

기간		매출액 기준
시작일	종료일	
1994.1	1994.12	45,000
1995.1	1995.12	46,000
1996.1	1996.12	47,000
1997.1	1997.12	48,000
1998.1	1998.3	49,000
1998.4	1999.3	50,000
1999.4	2000.3	51,000
2000.4	2001.3	52,000
2001.4	2002.4	54,000

〈표 Ⅱ-5〉의 계속

기간		매출액 기준
시작일	종료일	
2002.4	2003.4	55,000
2003.4	2004.3	56,000
2004.4	2005.3	58,000
2005.4	2006.3	60,000
2006.4	2007.3	61,000
2007.4	2008.3	64,000
2008.4	2009.4	67,000
2009.4	2010.3	68,000
2010.4	2011.3	70,000
2011.4	2012.3	73,000
2012.4	2013.3	77,000
2013.4	2014.3	79,000
2014.4	2015.3	81,000
2015.4	2016.3	82,000
2017.4	2018.3	85,000
2018.4	2019.3	85,000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UK VAT Notice 700/1:supplemen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at-notice-7001-should-i-be-registered-for-vat/vat-notice-7001-supplement--2)

나. 등록 신청

영국 내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록을 신청할 경우, 사업유형 및 등록대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록 신고와 등록일은 다음 〈표 Ⅱ-6〉과 같다. 사업유형과 등록대상에 따라 신고기간과 등록일이 서로 다르나, 대부분 부가가치세 등록 요건이 발생한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표 Ⅱ-6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일(사업별)

사업유형	등록대상	신고기간	등록일
과세대상 물품의 공급	등록기준금액 초과	과세대상물품이 등록기준액을 초과한 달 말로부터 30일 이내	과세대상물품의 매출액이 등록기준액을 초과한 이후 두 번째 달의 첫날
	향후 30일 이내에 등록기준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예상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	과세대상물품의 매출액이 등록기준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 날짜
해외판매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혹은 일부 연도의 해외판매액이 등록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출액이 등록기준금액을 초과한 후 30일 이내	매출액이 등록기준금액을 초과한 날짜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체의 인수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혹은 일부 연도에 다른 모든 EU 회원국으부터의 관련 취득 가치가 등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체 인수 후 30일 이내	인수일 이후 두 번째 달의 첫날
	인수 이후 30일 간 관련 취득가치가 등록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취득가치가 등록기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 날짜
관련 물품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거래와 관련한 물품의 공급	공급 후 30일 이내	첫 공급일
	향후 30일 이내에 관련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	예상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물품을 공급할 것으로 처음 예상한 날짜 혹은 첫 공급일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00/1 Who shoud register for VA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at-notice-7001-should-i-be-registered-for-vat/vat-notice-7001-should-i-be-registered-for-vat)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등록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등록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일은 과세대상물품의 매출액이 등록기준금액을 초과한 다음 달의 첫날 혹은 등록기준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 날짜가 된다. 예를 들어 〈표 Ⅱ-7〉에 제시된 사례와 같이 8월 31일에 등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은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일은 10월 1일이 된다. 해외판매의 경우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혹은 일부 연도의 해외판매액이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고를 해야 하며, 매출액이 등록기준금액을 초과한 날짜가 등록일이 된다. 만약 6월 15일에 등록기준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등록일은 초과한 날짜인 6월 15일이 되며 등록신고는 7월 15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표 Ⅱ-7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 신청 시기(사례)

등록대상		등록신고기간 (신청서 제출)	등록일
과세물품의 공급	지난 12개월 간의 과세대상물품 거래가 8월 31일에 등록기준액을 초과함	9월 30일	10월 1일
	1월 20일에 다음 30일 동안 과세대상 공급이 등록기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2월 18일	1월 20일
해외판매	해외판매가 등록기준금액을 초과한 날짜가 6월 15일	7월 15일	6월 15일
등록 사업체의 인수	사업체의 인수로 등록기준액이 초과된 날짜가 5월 31일	6월 30일	7월 1일
	인수 이후 30일 내에 관련 취득금액이 등록기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 날짜가 1월 20일	2월 18일	1월 20일
관련물품의 공급	첫 공급일이 4월 22일	5월 21일	4월 22일
	4월 22일에 다음 30일 이내에 첫 관련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	5월 21일	4월 22일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00/1 Who shoud register for VA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at-notice-7001-should-i-be-registered-for-vat/vat-notice-7001-should-i-be-registered-for-vat)

이미 부가가치세 등록이 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취득 후 가치가 등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체 인수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인수일 다음 달의 첫날 혹은 관련 취득가치가 등록기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 날짜가 등록일이 된다. 예를 들어 사업체의 인수로 등록기준액이 초과된 날짜가 5월 31일이라면, 등록신고는 6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등록일은 초과된 날짜 이후 두 번째 달의 첫날인 7월 1일이 된다. 인수 이후 취득금액이 등록기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 날짜가 1월 20일인 경우, 2월 18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등록일은 1월 20일이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과 관련한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일 혹은 관련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고가 이뤄져야 하며, 관련 물품의 첫 공급일 혹은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 날짜를 부가가치세 등록일로 한다. 예를 들어 첫 공급일이 4월 22일이거나 4월 22일에 다음 30일 이내에 첫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등록 신고는 5월 21일까지 마쳐야 하며 해당 사업의 부가가치세 등록일은 4월 22일이 된다.

다. 등록 취소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대상자가 해당 사업을 그만두거나, VAT 등록이 되어 있는 그룹에 소속될 경우, 해당 자격요건이 박탈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이 2018년도 기준 등록 해제 기준인 83,000파운드보다 낮은 경우에도 국세청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표 Ⅱ-8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 취소기준(1999~2018)

(단위: 파운드)

기간		매출액 기준
시작일	종료일	
1999.4	2000.3	49,000
2000.4	2001.3	50,000
2001.4	2002.4	52,000
2002.4	2003.4	53,000
2003.4	2004.3	54,000
2004.4	2005.3	56,000
2005.4	2006.3	58,000
2006.4	2007.3	59,000
2007.4	2008.3	62,000
2008.4	2009.4	65,000
2009.4	2010.3	66,000
2010.4	2011.3	68,000
2011.4	2012.3	71,000
2012.4	2013.3	75,000
2013.4	2014.3	77,000
2014.4	2015.3	79,000
2015.4	2016.3	80,000
2016.4	2017.3	81,000
2017.4	2018.3	83,000
2018.4	2019.3	83,000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UK VAT Notice 700/1:supplemen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at-notice-7001-should-i-be-registered-for-vat/vat-notice-7001-supplement--2)

라. 등록 면제

과세대상물품의 매출액이 등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영세율 혹은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모품을 인수하는 경우,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세금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보다 많은 경우 등은 등록면제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면제될 수 있다. 단, 공급품의 성격 혹은 사업체의 상황이 변경될 경우 즉시 재무부에 고지하여야 한다.

마.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 현황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새로운 등록자의 숫자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총등록사업자의 숫자 또한 1980년대 이후 증감을 번복하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총등록사업자 대비 새 등록자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증감을 반복하여 왔으며, 당해 연도에 활성화된 등록자의 비중은 1980년의 4.5%에서

표 Ⅱ-9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 수(1980~2017)

(단위: 만명, %)

구분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새 등록자 수	15.1	21.8	20.1	20.8	21.9	21.6	24.5	25.6	27.7	28.9	25.5
비중	11.3	12.5	11.8	10.9	11.5	11.3	12.4	12.5	13.0	13.2	11.6
당해 연도에 활성화된 등록자 수	6.0	7.8	5.4	4.9	5.1	5.2	5.6	5.7	5.8	5.7	5.7
비중	4.5	4.5	3.2	2.6	2.7	2.7	2.8	2.8	2.7	2.6	2.6
총등록자	133.8	174.5	169.8	191.4	190.8	191.8	197.4	204.3	213.1	219.7	219.9
등록취소자	14.0	18.3	18.6	23.7	22.4	20.7	18.9	18.6	19.0	22.2	25.3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value-added-tax-vat-annual-statistics)

2017년의 2.6%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총등록사업자 대비 새 등록자 및 당해 연도에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록자의 비중은 각각 11.6%에 해당하는 25.5만명, 2.6% 수준의 5.7만명으로 나타났다. 등록 취소 수는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6~2017년의 기간 동안에는 2015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세 납세자에 해당하는 등록된 사업자의 비중을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영리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법인사업자가 전체의 7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자로 예상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동업사업자의 비중이 각각 16.9%, 9.2%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지방정부는 0.1% 이하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비영리단체가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등록이 85,000파운드,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1억원을 호가하는 규모의 매출액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등록기준 이하인 조직은 부가가치세의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한 결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Ⅱ-1 등록된 사업자 유형별 비중(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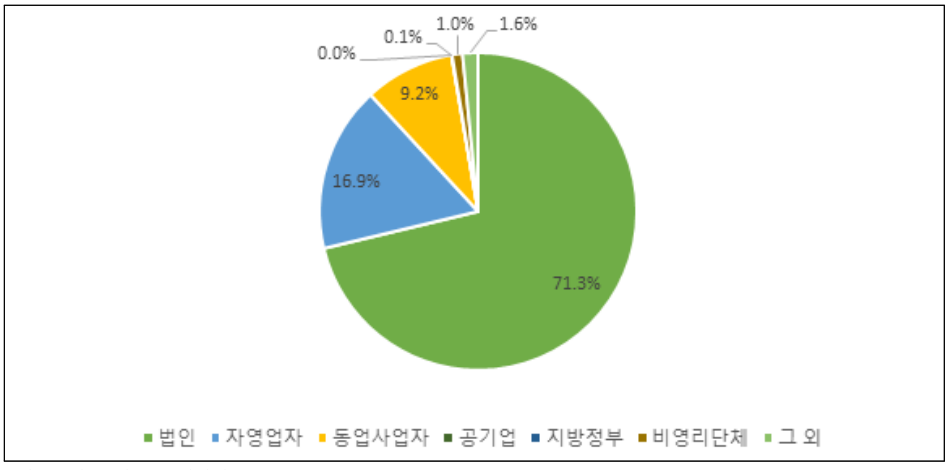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value-added-tax-vat-annual-statistics)

사업유형별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의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의 숫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도매 및 소매업 부문과 전문기술 및 과학기술 분야의 사업 부문으로, 2017년 기준으로 각각 총 42.9만명과 41.5만명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등록사업자 수가 많은 부문은 건설업으로, 2017년 기준으로 총 32.1만명이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표 Ⅱ-10 사업유형별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 수(2010~2017)

(단위: 백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림수산업	1,388.2	1,383.1	1,379.5	1,392.1	1,405.9	1,416.6	1,425.8	1,434.0
채굴 및 채석	25.2	27.2	30.4	34.8	38.5	40.6	39.5	38.1
제조업	1,264.0	1,242.4	1,236.3	1,264.6	1,293.9	1,332.6	1,362.4	1,361.1
전기, 가스, 증기 및 에어컨	16.8	24.5	32.4	39.9	49.4	58.7	62.8	65.0
급수, 하수 및 폐기물 관리	56.3	61.6	65.7	68.3	69.7	71.0	73.0	76.5
건설	2,797.0	2,724.0	2,659.3	2,710.1	2,791.1	2,931.7	3,098.3	3,208.9
도매 및 소매	3,850.3	3,834.8	3,809.7	3,854.9	3,844.8	3,879.9	3,987.7	4,287.2
운송 및 보관	688.1	677.1	678.7	718.5	797.0	909.1	1,070.0	989.3
숙박 및 식품 서비스	1,232.6	1,207.2	1,167.5	1,157.9	1,151.1	1,159.0	1,178.3	1,219.3
정보 및 통신	1,573.1	1,622.8	1,674.1	1,795.7	1,927.6	2,070.3	2,170.8	2,201.2
금융 및 보험	152.1	164.3	178.6	195.5	209.0	224.0	238.1	239.0
부동산	797.9	812.7	837.6	873.3	907.1	937.0	969.5	997.7
전문가, 과학 및 기술	3,218.4	3,329.7	3,463.7	3,687.9	3,905.4	4,127.8	4,254.3	4,151.1
관리 및 지원 서비스	1,324.6	1,272.5	1,253.7	1,276.4	1,327.7	1,418.5	1,495.7	1,482.4
행정 및 방위	26.9	26.3	27.6	33.5	46.2	57.7	57.3	44.1

〈표 Ⅱ-10〉의 계속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교육	162.8	167.2	169.5	179.1	187.4	197.9	243.1	207.4
보건 및 사회활동	111.8	117.9	122.8	134.7	154.8	178.7	194.1	147.7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578.3	577.8	572.5	573.4	578.2	587.4	595.5	600.5
기타 서비스 활동	703.9	676.2	643.1	618.1	592.9	577.0	566.8	563.8
고용주로서 가계활동	3.0	3.6	3.7	3.2	2.8	2.7	2.6	2.7
기타 조직	0.3	0.4	0.4	0.4	0.4	0.4	0.4	0.4
불문명	0.0	1.4	0.0	0.3	0.3	0.3	0.0	0.0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value-added-tax-vat-annual-statistics)

Ⅲ.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
2. 서비스의 공급
3. 기타

Ⅲ. 과세거래

영국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에는 일반적으로 영국 내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영국 외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및 물품 취득 등의 상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임대 혹은 고용, 물품의 교환 및 아르바이트 등 노동력의 거래, 내부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과세대상 거래는 면세 공급을 제외하고 영국 내에서 생산된 재화 혹은 서비스의 공급이다.

1 재화의 공급

이동가능한 모든 재화의 소유권의 이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에 포함된다. 또한 ① 고용 · 구매 계약과 같이 계약에 따라 재화 혹은 서비스를 양도하는 경우, ② 물 · 전력 · 열 · 냉방 및 환기 서비스의 제공, ③ 토지거래 및 21년 이상 임대차거래의 이자, ④ 개인의 사적 소유를 위하여 기업으로부터 소유권이 영구적으로 이전된 경우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포함된다.

2 서비스의 공급

재화가 포함되지 않는 대가를 위한 거래의 대부분은 서비스의 공급에 해당된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의 대가는 재화 및 서비스 자체를 포함하여 화폐 혹은 현물로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지불이 된다. 서비스 공급 활동은 〈표 Ⅲ-1〉과 같이 임대 및 타인의 생산물을 활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대가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자제하는 경우, 대가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부여하거나 양도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표 Ⅲ-1 서비스의 공급

- 사업 외 용도로 누군가에게 상품을 대여하는 경우
- 상품을 임대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이 제공한 재료를 토대로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 사업 외에 사업이 소유한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 대가를 위하여 어떤 일을 자제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 대가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부여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Guide(https://www.gov.uk/guidance/vat-guide-notice-700)

3 기타

가. 법령에 따라 과세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1) 중고거래(Part-exchanges), 물물교환(Barters), 채무상환(set-offs)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인정되는 과세대상에는 중고거래, 물물교환, 채무상환 등과 같은 거래도 포함된다. 중고거래와 물물교환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교환을 고객에게 돈을 지불했을 경우 고객이 지불했을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 채무의 거래 및 상환은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에게 채무가 존재할 경우 상계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회계 기록 및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를 고려하여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무료샘플의 제공, 사업자산에 대한 무상대출, 무료 선물, 무료 서비스의 제공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표 Ⅲ-2 중고거래, 물물교환 및 채무상환 등의 거래 중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

거래물품	부과되지 않는 조건
무료샘플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잠재고객이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수량으로 제공
사업자산의 무상대출	대출에 대한 비용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다른 비용에 포함
무료 선물	동일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모든 선물의 총비용이 12개월간 50유로 미만인 경우
무료 서비스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Guide(https://www.gov.uk/guidance/vat-guide-notice-700)

2) 자선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선단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85,000파운드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등록하고 3개월마다 소모품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에서 자선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는 단체는 ① 영국, 아일랜드, 다른 EU 회원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혹은 노르웨이에 기반하고 있으며, ② 자선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③ 필요한 경우 영국의 자선위원회 혹은 규제당국에 등록되어 있으며, ④ 영국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자선단체가 수행하는 특정 활동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자선단체의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감세 혹은 면세되고 있으나, 자선단체가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해서는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3) 할인 및 바우처의 제공

할인권 및 바우처의 제공, 다양한 품목의 상품 구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대부분 제공된 할인권 및 바우처의 액면가액이 아닌 할인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며, 일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표 Ⅲ-3 할인 및 바우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거래유형	부가가치세 부과 방법
할인	할인된 가격에 부과
선물	선물의 총가치에 대하여 부과 (총 12개월간 50유로 미만의 선물을 제공한 경우 과세하지 않음)
다중구매	모든 품목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동일하면 합산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나, 세율이 다른 경우 혼합 과세 상품으로 취급하여 부과
바우처, 할인쿠폰 등의 제공	구매 시 무료로 증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공된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다양한 종류의 재화 혹은 서비스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액면가액' 바우처	제시된 화폐가치 이하로 판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없음
재상환된 액면가액 바우처	거래된 전체 가치에 대하여 부과
할인된 액면가 바우처	거래된 할인가격에 대하여 청구
온라인 링크를 통한 무료 상품의 제공 혹은 할인 제공	품목별 혼합 과세 상품으로 분류하여 부과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Businesses and charging VAT
(https://www.gov.uk/vat-businesses/discounts-and-free-gifts)

4) 반품

사업자가 상품의 공급업체로 물품을 반송하거나, 고객이 사업자에게 상품을 반송할 경우에는 대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용 혹은 직불어음의 발행을 통하여 지불 잔액을 정산할 수 있다. 단, 동일한 가격의 상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신용 혹은 직불어음의 발행 시에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정보, 즉 해당 어음의 발행 이유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거래금액, 기존 세금계산서의 번호 및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수입거래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에는 영국 외 국가에서의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입 및 취득 또한 포함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위탁 · 포장 · 운송 · 보험비용과 같은 모든 부수적 비용과 영국으로 수입할 때 부과되는 모든 관세 및 세금, 기타 소비세와 부과금을 포함하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된다. 상품이 EU 회원국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와 EU 외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영국에서의 상품 공급과 동일한 세율로 계산한다. 단, 영국 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수입한 EU 회원국의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사업자는 사업목적을 위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지불한 수입 부가가치세를 매입세로서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대하여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거래기간은 상품이 영국에 도착한 달 다음 달의 15일 혹은 공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가 된다. 영국으로 수입한 상품의 가격이 외화로 책정되는 경우, 상품의 가치를 먼저 적정한 환율에 따라 환산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Ⅳ. 과세표준

1.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2.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3. 기타(VAT margin schemes)

Ⅳ. 과세표준

1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영국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도매 혹은 소매와 관계없이 영국에서 판매된 모든 재화 혹은 서비스로, 생산 공정 및 거래의 각 단계별로 추가된 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가치는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가치의 총 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은 모든 재화 혹은 서비스의 최종 가치, 즉 최종 매출액이며 과세대상의 매출액 중 면세조건에 부합하여 면세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거래의 매출액 혹은 상품의 최종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2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해외에서 재화 혹은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취득, 구매하는 경우 HMRC에 이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혹은 서비스를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였는지 혹은 EU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화나 서비스를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영국으로 반입하는 모든 상품의 부가가치세는 영국 내 공급업체가 사업자에게 공급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다. 즉, 해당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모든 거래의 매출액 혹은 상품의 최종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단, 파운드화가 아닌 외화로 상품의 가치가 책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적정한 환율에 따라 물품의 가치를 파운드화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물품가격을 파운드화로 환산하는 경우 상품 공급시점의 영국 내 시장 환율 혹은 재무부가 발행하는 기간별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EU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영국 내에서의 공급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해외의 공급업체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직접 계산하지만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은 상품의 최종가격 혹은 모든 거래의 매출액이 된다.

3 기타(VAT margin schemes)

영국은 중고제품, 미술품, 골동품, 수집품 등의 일부 상품에 한하여 총판매액이 아닌 상품의 원구매액과 판매액 간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이때 차액에 대하여 16.67%(과세표준금액의 1/6)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단, 이 제도는 중고제품 및 미술품, 골동품, 수집품 중 이미 부가가치세가 청구된 물품이나 귀금속, 투자금, 보석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중고차, 말과 조랑말, 요트 혹은 여객용 차량(카라반) 등 판매 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예외규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Box 3 부가가치세 특례제도(margin scheme) 적용 사례

- 예술작품을 £1,500에 구입하여 £2,000에 판매할 경우,

예술작품의 원구매가격	£1,500
예술작품의 판매가격	£2,000
차액(과세표준)	£500
발생한 총부가가치세액	£83.33

※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16.67%(1/6)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적용 사례
(https://www.gov.uk/vat-margin-schemes)

Ⅴ. 세율과 세액의 계산

1. 기본세율구조
2. 매입세액 공제
3. 의제매입세액 공제
4.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Ⅴ. 세율과 세액의 계산

1 기본세율구조

가. 표준세율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제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2019년 기준 표준세율인 20%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에 한하여 감세 혹은 면세하고 있다. 5%의 감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은 유아용 차량 시트 혹은 일부 가정용 에너지 절약 상품 등이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영세율 혹은 면세품목에는 식품, 아동용 의류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① 공급자와 소비자가 누구인가, ② 그 재화나 서비스가 어디에서 공급되는가, ③ 판매방식이 무엇인가, ④ 해당 재화 혹은 서비스의 명확한 본질이 무엇인가, ⑤ 소비자에게 있어 필수재에 속하는가, ⑥ 소비자의 구매기록이 명시되는가, ⑦ 다른 재화 혹은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표 Ⅴ-1 영국의 부가가치세 세율(2019년 기준)

기준	세율	적용품목
표준세율 (Standard)	20%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
감면세율 (Reduced rate)	5%	유아용 차량 시트 혹은 일부 가정용 에너지 절약 상품,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이동 보조 시설 등의 일부 상품 및 서비스
영세율/면세 (Zero rate)	0%	책, 신문, 아동용 의류 및 신발, 오토바이 헬멧, EU 외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 등 면세대상 상품 및 서비스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부가가치세율 안내(https://www.gov.uk/vat-rates)

등의 조건에 따라 재화 혹은 서비스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건설 혹은 기부 등 금전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 영국 외 EU 회원국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조건별로 다른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영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973년 도입 당시 10%를 적용하였으나, 국제 거시경제적 흐름 및 국가재정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었다. 도입 이후 1975년에는 표준세율이 8%로 인하되었으나, 이후 1985년에는 15%까지 세율이 인상되었다. 5년간 15%로 적용되던 표준세율은 1991년에 17.5%로 인상되었으며, 이후 2008년까지 17.5%의 세율이 유지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15%로 세율을 인하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극복 이후에는 다시 이전과 같은 17.5%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을 20%로 인상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표 V-2 영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변화

(단위: %)

적용연도	표준세율
1975	8
1985~1990	15
1991~2008	17.5
2009	15
2010	17.5
2011~2018	20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부가가치세율 안내(https://www.gov.uk/vat-rates)

나. 감면세율

영국의 부가가치세 감면세율(reduced rate)은 1994년 연료 및 전기 공급에 대하여 8%로 할인된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1997

년부터는 연료 및 전기, 그 외 에너지 절약 및 공급제품 등에 대하여 세율을 5%까지 인하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는 1997년 이후 감면세율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과세대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표 Ⅴ-3 영국의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율(reduced rate) 변화

적용연도	감면세율
1994	8%(연료 및 전기의 공급)
1997~2018	5%(연료 및 전기의 공급 외에 다른 에너지 절약 및 공급제품으로 확대, 1997년 이후 감면세율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제품에도 동일 적용)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부가가치세율 안내(https://www.gov.uk/vat-rates)

감면세율은 총 11개 그룹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정용 연료 및 전원 공급 장치 및 에너지 절약 시설의 설치 및 공급, 냉난방기구 및 보안용품의 지원 및 연료 공급, 여성용 위생용품 · 어린이용 카시트 · 피임제품 등 특정 상품 공급, 주거지 환경 변경 및 보수 · 개조 서비스의 공급, 복지 상담 및 정보서비스의 공급, 이동가옥 및 관련 서비스의 공급, 케이블 전송이 가능한 운송시스템의 공급 등에 대하여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 Ⅴ-4 감면세율 적용 품목

종류		적용품목 및 내용	적용세율
그룹 1.	케이블 전송을 통한 운송시스템	케이블 전송이 가능한 운송시스템의 공급, 승객 수송은 포함되지 않음	5%
그룹 2.	이동가옥	이동가옥 및 관련 서비스의 공급	
그룹 3.	기부	기부를 위하여 사용된 연료 및 소모품 중 영세율 적용 상품을 제외한 일부	
그룹 3.	냉난방 기구 및 보안용품에 대한 기금지원 혹은 가스 공급	서비스 수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되는 난방기구, 보안장비 및 등의 재화와 서비스 공급	
그룹 4.	어린이용 카시트	어린이용 카시트 및 관련 용품	
그룹 5.	거주지 보수 및 개조	주거시설의 보수 및 개조 관련 서비스 공급, 건축자재의 공급 등	
그룹 6.	피임제품	피임기구 및 피임약 등의 공급 등	
그룹 7.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주거용 숙박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그룹 8.	가정용 연료 혹은 전원 공급장치	가정용 연료 및 전력의 공급자, 연료유, 경유 및 등유 외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소모품 포함	
그룹 9.	냉난방 기구 및 보안용품에 대한 기금지원 혹은 가스 공급	서비스 수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되는 난방기구, 보안장비 및 등의 재화와 서비스 공급	
그룹 10.	호텔, 호스텔 및 거주용 숙박시설	주거용 숙박시설에서 28일 이상 머무르는 손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	
그룹 11.	노인을 위한 이동보조 시설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이동 보조 시설 등의 일부 상품 및 서비스	
그룹 13.	복지 상담 및 정보서비스	복지 상담 및 정보서비스 제공 정부규제서비스 제공	
그룹 14.	여성용 위생용품	여성용 위생용품	

주: 그룹 12는 일부 금연용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모든 금연제품에 대하여 영세율 혹은 면세가 적용되므로 제외되었음.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rates on different goods and services (https://www.gov.uk/guidance/rates-of-vat-on-different-goods-and-services)

2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은 사업상의 구매 및 지출비용에 대하여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① 표준세율, 감면세율, 영세율에 의하여 거래된 재화 혹은 서비스, ② 타 국가에 수출되어 영국 부가가치세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영국에서 생산된 상품, ③ EU 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 혹은 EU 외 국가로의 재화 수출에 직접 관련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사업상의 거래 및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접대를 목적으로 제공된 재화 혹은 서비스의 경우 등은 매임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하다.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완료한 이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된다.

표 Ⅴ-5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제 가능	공제 불가능
• 표준세율, 감면세율, 영세율에 의하여 거래된 재화 혹은 서비스 • 영국에서 생산됐지만 타 국가에 수출되어 영국 부가가치세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품 •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영국에서 생산된 해외공급(foreign)으로 구분되는 상품 • EU 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제공되거나 EU 외 국가로의 재화 수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공되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	• 구매 혹은 지출하였으나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재화 및 서비스 • 배달료, 자동차 관련용품 등을 포함하는 자동차 사용료 • 건축업자가 영세율 혹은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거래한 빌딩의 일부 시설물 • 접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본인 혹은 미공개 대리인의 여행시설 구입 후 재판매 • 중고상품의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판매가격이 높은 경우)의 거래 • 사업에 귀속된 자산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guide(https://www.gov.uk/guidance/vat-guide-notice-700)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금액은 〈표 Ⅴ-6〉과 같다.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따라 매입세액 전부를 환급 가능한 경우의 공제금액은, 해당 매입 물품 공급업체의 부가가치세 영수증에 표시된 부가가치세의 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청구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여주지 않는 간이영수증을 신고한 경우, 표준세율에 따라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상품의 경우 공급시점에 유효한 부가가치세율을 고려한 총부가가치세 비율에 따른 금액이 공제금액이 된다. 2003년 1월 1일부터 수령한 물품에 대하여 지급일(일반적으로 영수증에 기재된 일자로 간주) 혹은 지불 마감일(후불의 경우) 이후 6개월 이내에 공급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매입한 세액은 상환해야 한다.

표 Ⅴ-6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금액

조건	공제금액
• 신고내용에 따라 매입세액 전부를 환급 가능한 경우	• 공급업체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금액
• 청구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여주지 않는 간이영수증의 경우	• 표준세율에 따라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상품의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율에 따른 총부가가치세 비율(VAT fraction)임 • 공급시점에 유효한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율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guide (https://www.gov.uk/guidance/vat-guide-notice-700)

3 의제매입세액 공제

일반적으로 면세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 동안 면세된 총세액이 월별 평균 625파운드를 넘지 않고 과세대상 기간 동안의 세액이 총 매입세액의 절반에 이하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단계는 〈표 Ⅴ-7〉과 같다.

표 Ⅴ-7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1. 과세대상 물품에 직접 귀속되는 매입세액 규모의 확인
2. 면세물품에 귀속되는 매입세액 규모의 확인
3. 공제 가능한 잔여매입세액의 확인(1, 2단계에서 직접 귀속되는 매입세를 제외한 총매입세 규모) 및 계산
4. 1에서 직접 귀속되는 매입세액과 3에서 계산된 잔여매입세액 규모의 합산 = 공제 가능한 총과세대상 매입세액
5. 면세물품에 귀속되는 매입세액 규모와 과세대상 물품에 귀속되지 않은 잔여매입세액을 합산하면 공제되지 않는 사업자의 총면세 세금도 도출 가능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06 중 매입세액 최소한도액 계산의 예
(https://www.gov.uk/guidance/partial-exemption-vat-notice-706)

〈표 Ⅴ-7〉에 따라 다음 〈Box 4〉과 같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최소한도액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의 경우, 총매입세 중 면세물품에 대한 매입세 비중이 34.65%로 절반 이하지만, 월별 평균 매입세액이 1,025파운드로 최소한도액 기준인 625파운드 이상이기 때문이 공제가 불가능하다.

Box 4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최소한도액 기준 적용 사례

- 매입세액의 공제에 있어 최소한도액 기준의 적용

면세물품에 직접 귀속되는 매입세	£7,500
잔여 매입세에 대한 면세 비율	£4,800
	£12,300
발생한 총매입세액	£35,500

↓

£12,300 = 월별 £1,025(12개월 기준)
총매입세 £35,500 중 면세물품에 대한 매입세 비중 = 34.65%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06 중 매입세액 최소한도액 계산의 예
(https://www.gov.uk/guidance/partial-exemption-vat-notice-706)

4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품가격과 제외된 상품가격을 산출하여 각각 세액을 계산한다.

Box 5 납부세액의 계산을 위한 부가가치세 금액의 산출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
  - 표준세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판매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에 1.2를 곱하여 계산함
- 부가가치세 제외 가격
  - 표준세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1.2로 나눔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Business and charging VAT
(https://www.gov.uk/vat-businesses/inclusive-exclusive-prices)

Ⅵ. 영세율과 면세제도

1. 영세율
2. 면세제도

Ⅵ. 영세율과 면세제도

1 영세율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세액이 0이 되어 수요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고 공급자는 해당 재화 혹은 서비스의 공급 과정에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즉, 영세율을 적용하게 될 경우 매출세액의 면제와 매입세액의 환급이 허용되며(박정수, 2009), 결과적으로 단계별 부가가치세에 과세가 모두 취소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완전면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영세율 적용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부칙 8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표 Ⅵ-1〉과 같이 분류한다.

표 Ⅵ-1 영세율 적용 품목

종류			적용품목
그룹 1.	식료품	일반적인 식 · 음료	• 사람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일반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무알코올 음료
		축산 및 낙농 동물, 가금류, 꿀벌, 수산동물	• 영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식용 및 애완 모두 포함) 종이거나 축산 및 낙농업 등 인간이 식품으로 소비하는 동물 • 관상용 제외
		동물용 식품	• 개,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공되지 않은 신선식품도 포함
		식물, 종자 및 식물의 생산에 필요한 그 외 증식식물(포자, 뿌리줄기 등), 식품으로 활용되는 씨앗	• 인간 혹은 식용동물의 소비를 위한 식품용 식물의 판매

〈표 Ⅵ-1〉의 계속

종류			적용품목
그룹 2.	하수서비스 및 물	하수도 서비스	• 부패한 물 혹은 하수의 대량 처리, 처분 등 • 저수지, 정화조 및 유사한 시설의 처리
		비상업용 용수	• 증류수, 탈이온수 등 • 가정에 공급되는 물
그룹 3.	서적		• 소책자, 브로셔, 팜플렛 및 전단지 • 신문, 저널 및 정기간행물 • 어린이 그림책 및 페인팅북 • 악보 • 지도, 차트 및 지형도
그룹 4.	시각장애인용 도서 및 무선용품		•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립연구소, 국립 청음도서관 등 기타 유사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 무선수신세트 등 자선단체 공급상품
그룹 5.	건물의 건설 및 개조		• 주거 및 거주용 주택의 실질적 재건축 • 화장실 설치,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및 출입구 설치 • 자선목적의 신축건물 최초임대 및 장기임대차 판매 • 신규주택 건설 및 최초임대, 장기임대차 판매 • 주거지, 주거지 전환된 상업용 건물, 주거목적 개조건물, 자선목적 개조건물의 최초 자유보유 또는 장기임대차 판매
그룹 6.	방호건물 (protected building)		• 거주 혹은 자선목적의 방호빌딩 재건축 및 판매
그룹 7.	일부 국제서비스		• 유럽연합 이외의 장소에서 화물을 반출하는 국내선 • EU 외 지역 혹은 EU 회원국으로의 화물컨테이너 판매, 리스, 고용 • 영국 국토 및 영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화물운송
그룹 8.	수송		• 항공기 수리 및 유지보수 • 비행선, 민간항공기, 헬리콥터, 군용비행기의 판매 및 전세 • 선박 수리 및 유지보수 • 10명 이상 승객의 탑승이 가능한 차량, 보트, 항공기의 승객수송

〈표 Ⅵ-1〉의 계속

종류		적용품목
그룹 9.	이동주택 및 숙박시설이 있는 요트	• 하우스보트 판매 및 전세
그룹 10.	금	• 중앙은행이 다른 은행 혹은 런던골드마켓 회원에게 제공하는 금의 공급
그룹 11.	지폐	• 요구에 따라 무기명으로 지불할 수 있는 어음 발행
그룹 12.	개업의에 의하여 처방된 의약품,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용 보조기구 • 장애인용 건물서비스 • 저시력 보조기구 • 등록된 약사에 의하여 처방된 처방전
그룹 13.	일부 수출 및 수입품	• 구매자가 EU 회원국이 아닌 곳에서 수입한 물품의 입고를 의무화하는 약정에 따른 물품의 인도 전 공급
그룹 15.	특정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 자선을 위한 광고서비스 • 자선기금모금행사에서 판매된 특정 물품 • 자선상점, 기부물품 판매 • 자선 목적을 위한 신축 건물의 건설 및 판매
그룹 16.	아동의류, 신발류, 헬멧 등 특정 보호의류	• 아동의류 • 어린이용 의류 및 신발 • 오토바이 및 사이클 헬멧 • 산업용 보호 신발 및 헬멧
그룹 19.	여성 위생용품	• 요실금 제품 • 출산패드 • 위생보호제품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rates on different goods and services (https://www.gov.uk/guidance/rates-of-vat-on-different-goods-and-services)

2 면세제도

영국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면세와 부분면세로 구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 등록이 불가하고 구매 혹은 지출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재화 혹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경우,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사라지지만 영세율과 달리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공급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가격에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이 경우 영세율과는 달리 해당 공급단계에서 발생한 산출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이전 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된 채 유지되므로 '부분면세'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은 영국 부가가치세법 부칙 9에 제시되어 있으며, 총 15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표 Ⅵ-2 품목별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스포츠, 레저, 문화 및 골동품)

종류		적용품목
그룹 1.	토지 및 재산	• 주거용 주택과 함께 임대되는 차고 또는 주차공간 • 토지, 건물 점유 허가 혹은 면허 • 선상가옥 및 딸린 주차공간
그룹 2.	보험	• 보험가입료 • 보험 및 재보험거래 • 보험중개 및 대리 • 다른 재화 혹은 서비스와 함께 제공된 보험
그룹 3.	우편서비스	• 보편적서비스 의무하에 제공되는 공공우편서비스
그룹 4.	겜블, 도박, 복권 등	• 도박 및 게임 • 빙고(원격게임 포함) • 복권판매 • 온라인 복권게임 • 복권판매에 대한 소매업체 수수료

〈표 Ⅵ-2〉의 계속

종류		적용품목
그룹 5.	금융서비스	• 통장발행, 이체 등 금전거래, 유가증권 및 지불명령 등 금융서비스 • 대출 및 신용등급 부여, 관리 • 할부구매를 위한 할부 신용 금융 • 주식, 채권을 포함한 보안거래 • 예금, 저축계좌의 운영, • 적격특별투자자금의 관리 등
그룹 6.	교육	• 학교, 대학 등과 같이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직업훈련 및 기타 관련 서비스
그룹 7.	보건 및 복지서비스	• 병원, 호스피스, 양로원 등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 혹은 치료 • 등록된 의사, 치과의사, 안경점, 약사 및 기타 건강전문가가 제공하는 건강서비스
그룹 8.	장례	• 매장, 화장 및 수장 서비스 • 장례보험에 따른 장례식
그룹 9.	노동조합 직업 · 단체교섭	• 노동조합 회원가입 및 노조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그룹 10.	스포츠 및 체육 교육 · 시설 사용 면제	• 자격이 갖춘 비영리단체의 스포츠 및 체육 교육 및 활동 서비스, • 스포츠 경기 시설 및 장비 제공 • 심판, 심사 및 코치서비스
그룹 11.	미술 · 골동품	• 민간과의 협약에 따라 공공에 제공되는 미술품, 골동품 등
		• 세무청에 세금 혹은 부동산의 의무부채를 청산하는 데 사용되는 예술품, 골동품 등
그룹 12.	자선사업, 기부 및 기금 마련 행사	• 자선단체 입장료, 자선기금 모금 행사, 자선단체의 기금 마련 행사 지원
그룹 13.	문화	• 박물관 관람, 미술전시회, 동물원 및 공연 등 특정문화행사에 대한 공공기관, 적격 문화 단체의 입장료
그룹 14.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재화의 공급	• 전임자 혹은 관련 공급자가 이미 지불한 투입세금
그룹 15.	금	•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금화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00
(https://www.gov.uk/guidance/vat-guide-notice-700#zero-rating-reduced-rating-and-exemption)

Ⅶ. 공급장소와 공급시기

1. 공급장소
2. 공급시기

Ⅶ. 공급장소와 공급시기

1 공급장소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의 목적에 따라 영국의 부가가치세 또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재화 혹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장소를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지로 한다.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의 공급지별로 ① 영국에 본사가 존재하며 다른 고정사업장[1]은 없는 기업, ② 영국 외에 본사가 존재하며 영국 내에 고정된 사업소가 존재하는 기업, ③ 고정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지만[2] 사업주의 거주지가 영국인 기업은 영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급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중 하나가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의 생산 및 공급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장이 공급장소가 된다.

Box 6 사업장이 둘 이상인 기업의 예

- 프랑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한 기업이 영국 은행과 계약하면서 런던에 있는 은행의 국제 데스크에 프랑스어 통역 직원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공급장소 결정: 프랑스 회사는 영국에 고정된 지사가 존재하나, 영국 은행과의 거래에 영국 지점은 개입되지 않고 해당 통역 직원은 프랑스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음 → 프랑스가 공급장소

1) 고정사업장은 해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의 영국 지사, 해외에 사업체를 두고 영국의 부동산을 소유한 영국 기업의 부동산,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의 자회사가 영국 내에 만든 시설, 해외 석유 및 가스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영국 기업의 고정 생산 플랫폼 등이 포함된다.

2)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① 회계사무소의 주소가 영국에 등기 혹은 등록되어 있으나 다른 사무소나 직원은 없는 해외 기업, ② 귀국 전 다큐멘터리의 촬영을 위하여 1주일 동안 영국으로 직원과 카메라 장비를 보내는 해외 방송국, ③ 일회성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국에 임시로 들어와 있는 해외 건설업자와 건축팀, ④ 컴퓨터 서버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기업, ⑤ 영국에 부가가치세 등록이 되어 있으나 다른 어떠한 지원 자원도 존재하지 않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 영국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영국 내 개인들과 해외 서비스 거래 계약 체결, 해당 서비스는 영국 지사에서 제공되며 영수증이 발행, 고객들은 영국 지사와 거래하며 영국 지사에 대금을 지불 → 영국이 공급장소

- 영국의 광고업체가 영국에 고정된 사업장을 가진 고객의 오스트리아 본사에 광고서비스를 제공, 일반적인 행정 처리는 오스트리아의 지점과 영국 지점 간에 이루어지나 광고는 오스트리아에 제공 → 오스트리아가 공급장소

- 영국에 본사가 존재하고 다른 여러 EU 회원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고객이 스위스 지사를 통해 통신서비스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스위스에서 모든 요금을 지불, 통신서비스는 EU 전역의 모든 지점에서 사용 → 제공되는 통신서비스가 특정 지점의 요구를 위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은 영국의 본사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41A
(https://www.gov.uk/guidance/vat-place-of-supply-of-services-notice-741a)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장소에 대하여 '사업자와 사업자 간 공급'과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 간 공급'별로 다른 규칙이 존재한다.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 간에 거래되는 B2C 상품의 경우, 공급장소는 소비자의 위치와 관계없이 공급업체가 속한 지역이 된다. 반면, B2B 상품의 경우 고객의 위치가 공급장소가 된다.

표 Ⅶ-1 서비스 유형별 공급장소

서비스 유형	공급지
• 토지관련 서비스	• 토지가 위치한 장소
• 운송수단의 대여	• 단기임대: 고객이 실제 운반수단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소 • 고객이 속한 장소
• 이벤트 및 이벤트 입장 관련 서비스(예술, 문화, 교육 및 훈련,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전시회, 회의 등) • 보조운송수단의 제공 •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관련 서비스	• B2B: 제한된 시간 동안 이벤트와 관련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 • B2C: 이벤트와 관련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 • 해당 서비스를 물리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표 Ⅶ-1〉의 계속

서비스 유형	공급지
• 승객수송 및 화물운송	• 고객이 속한 곳
• 중개업	
• EU 외 국가의 고객에게 제공되는 특정 B2C 서비스	• 서비스의 사용 및 향유 장소
• 디지털서비스 • 상품 대여 및 허용(운송수단 포함)	
• B2C 디지털서비스 공급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41A
(https://www.gov.uk/guidance/vat-place-of-supply-of-services-notice-741a)

가. 토지 관련 서비스의 공급지

사업자가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가 속한 장소 혹은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되는 토지가 위치한 장소가 해당 토지 관련 서비스의 공급장소가 된다. 이때 공급지를 결정하기 위한 토지는 지표 위, 해저 혹은 해수면에 고정되어 있거나 쉽게 해체 혹은 이동하기 어려운 건물 및 구조물, 건축물 혹은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 건물 혹은 구조물을 영구적으로 설치한 장비 혹은 건물이나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변경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는 구조물 등이 해당된다.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관련 재화 및 서비스는 직접적 · 간접적으로 구분되며, 각각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표 Ⅶ-2〉에 나타나 있다. 사업자가 영국 이외의 EU 회원국에서 토지 관련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

표 Ⅶ-2 토지 관련 서비스의 구분

토지와 관련한 직접적인 서비스	토지와 관련한 간접적인 서비스
• 건물 또는 영구 구조물의 건설 및 철거(예: 가스, 수도 또는 하수관용 파이프라인) • 측량 및 자산평가 • 원격으로 수행되는 보험 혹은 대출목적의 자산 평가 • 호텔, 캠프, 캠핑장 및 시간제 숙박시설 • 건물의 유지 · 관리, 수리 · 보수 • 소유자를 대신하여 수행되는 부동산 관리 서비스 • 토지 및 재산의 매매, 임차권 조정서비스 • 특정부지를 위하여 지정된 건물 혹은 그러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설계 • 특정 장소에 대한 건설계획의 동의 획득 • 현장보안 서비스 • 농업토지 관련 사업(파종, 급수 등) • 설치 시 쉽게 분해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재산의 고정장치가 되는 기계의 설치 및 조립 •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 사용권(조업권, 사냥권, 공항 라운지 접근권) 부여 • 소유권 검색, 특정 재산에 대한 실사, 판매 및 임대계약의 전달 및 작성 등 일부 법률서비스 • 교량 및 터널 통행료 • 광고판 사용을 위한 공간 제공	• 특정 부지와 관련이 없는 건물 혹은 건물 일부에 대한 계획 작성 • 호텔 숙박시설 혹은 유사한 서비스 공급의 주선 • 건물의 일부가 아닌 기계 및 장비의 설치, 조립, 수리 및 유지관리 •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관련 회계 및 세무조언 • 고객전용의 물품보관소 • 광고판의 사용을 포함하는 광고서비스 • 마케팅, 사진 및 홍보 • 계약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조언 • 부동산 취득을 위한 기금 모금, 토지를 소유한 기업 혹은 단위 신탁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 • 컨퍼런스 혹은 전시에서의 공간 확보를 위한 서비스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41A
(https://www.gov.uk/guidance/vat-place-of-supply-of-services-notice-741a)

나. 운송 및 운송관련 서비스의 공급지

운송수단은 사람이나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든 차량, 장비 혹은 장치를 포함한다. 운송수단으로 간주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경우 선박, 보트, 요트, 바지선 등의 선박 관련 재화와 항공기, 자동차 및 기타 이동용 장비 등이 포함된다. 반면, 화물컨테이너, 이동식 기중기, 추수용 농기계, 고정된 이동식 주거지 등은 운송수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표 Ⅶ-3 운송 수단 및 관련 서비스의 구분

운송수단으로 간주	운송수단으로 간주되지 않음
• 선박, 보트, 요트, 바지선 등 • 항공기(글라이더, 열기구 및 헬리콥터 포함) • 자동차, 트럭, 화차 • 오토바이, 사이클 • 여행용 이동식 주택 • 철도 • 병자 이송용 차량 • 농업용 트랙터 및 기타 농업용 차량 • 기계식 혹은 전자식 이동용 스쿠터	• 화물 컨테이너 • 이동식 기중기 • 추수용 농기계 • 고정된 이동식 주거지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41A
(https://www.gov.uk/guidance/vat-place-of-supply-of-services-notice-741a)

운송수단 및 운송관련 서비스의 공급장소는 공급을 받는 사람과 해당 운송수단의 임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기임대란 선박을 제외한 다른 운송수단의 경우 30일, 선박일 경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 지속기간을 의미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는 장기임대에 해당한다. 단기임대와 장기임대의 구분에 따라 운송수단의 공급지가 실제 운반수단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소와 고객이 속한 장소로 구분된다.

표 Ⅶ-4 단기임대와 장기임대의 구분

조건	공제금액
동일한 운송수단의 임대를 위한 2개 이상의 개별 계약이 2일 이내의 간격을 두고 진행될 때	2차 계약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1차 계약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두 계약이 모두 30일의 단기임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선박의 경우 90일), 2차 계약 및 추후 연속 계약은 장기임대로 처리된다. 1차 계약이 단기임대에 의한 계약이라면 그대로 유지됨
동일한 두 거래자 간에 단기계약을 위한 2차 계약이 존재함	2차 계약이 1차와 다른 운송수단에 관련되어 있거나, 임대계약이 다를 경우 2차 계약은 1차와 별도로 고려해야 함
단기임대 계약의 연장	계약의 연장에 따라 장기임대가 될 경우, 공급장소는 장기임대규정에 의하여 결정됨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41A
(https://www.gov.uk/guidance/vat-place-of-supply-of-services-notice-741a)

표 Ⅶ-5 서비스 유형별 공급지(단기임대와 장기임대)

서비스 유형	B2B	B2C
단기임대	고객이 실제 운반수단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소 (차량의 키를 건네줄 때 차량이 위치하는 곳)	
장기임대	고객이 속한 장소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41A
(https://www.gov.uk/guidance/vat-place-of-supply-of-services-notice-741a)

다. 이벤트 관련 서비스

이벤트의 운영 및 입장, 보조운송수단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케이터링 등의 서비스는 해당 재화 혹은 서비스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지(B2B)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지(B2C)에 따라 공급지가 다르게 적용된다. B2B인 경우, 이벤트에 대한 입장료 및 제공이 승인된 서비스, 해당 이벤트의 개최 장소에서 제공되는 부가적인 서비스 등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면 B2C의 경우 B2B에 비하여 수행되는 서비스의 종류가 보다 광범위하며, 문화 · 예술 · 스포츠 · 과학 · 교육 · 오락 및 다양한 유사 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B2B 서비스에는 무역 박람회의 입장권 제공 및 관람서비스, 단기 교육회의 및 세미나 등이 포함되며, 이 경우 재화 및 서비스의 승인 혹은 제공 장소가 공급지가 된다. 반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승인 및 제공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에게 제공되는 이벤트,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서비스, 일부 보조 운송 수단과 관련한 재화 및 서비스의 경우 해당 재화 및 서비스가 대부분 이동 가능한 유형자산에 해당되며, 그로 인해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이 물리적으로 이뤄지는 장소가 공급지가 된다. 이때 사업자와 고객은 보통 동일한 장소에 존재한다. 단, 토지 혹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물품과 같이 이동이 부동 자산이 포함될 경우에는 B2B 공급의 공급지 규정을 따른다.

표 Ⅶ-6 서비스 유형별 공급지(이벤트 관련 서비스)

서비스 유형		B2B	B2C
이벤트 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이벤트 종류	• 문화 · 예술 · 스포츠 · 교육 등과 관련한 이벤트에 대한 입장료 및 관람서비스 • 해당 이벤트의 개최장소에서 제공되는 부가적 서비스 (회의 및 세미나 등)	• 결혼식 및 파티에서 공연하는 가수의 서비스 • 박물관 등의 관람이 포함된 여행서비스 • 스포츠 경기의 입장료 • 행사 참석을 포함하는 결혼식 혹은 파티 • 교실 교육 과정
	공급지	• 제한된 시간 동안 이벤트와 관련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	• 이벤트와 관련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서비스		-	• 해당 서비스를 물리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일부 보조운송수단 등 개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서비스		-	• 해당 서비스를 물리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41A
(https://www.gov.uk/guidance/vat-place-of-supply-of-services-notice-741a)

라.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화물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공급지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등록지로 규정된다. 즉 일반적으로 영국 내에서 사업자인 공급자가 영업 중인 다른 사업자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가 영국에 제공되는 경우 영국이 공급지가 된다. 그러나 영국과 EU 회원국 간의 이동,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를 통과하는 경우의 EU 회원국 간 운송, 화물운송 및 관련서비스의 주요 공급업체에 대한 하청업체의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표 Ⅶ-7〉 및 〈Box 7〉과 같이 공급지에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표 Ⅶ-7 서비스 유형별 공급지(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서비스 유형		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인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영국 내	고객이 속한 곳(영국)	
	영국과 EU 회원국 간	고객이 속한 곳	물리적으로 관련서비스가 수행되는 장소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를 통과하는 EU 회원국 간 운송		EU 내 운송으로 취급	
화물운송 및 관련서비스의 주요 공급업체에 대한 하청업체		주 공급업체의 상태에 따라 공급장소 달라짐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41A
(https://www.gov.uk/guidance/vat-place-of-supply-of-services-notice-741a)

Box 7 사업자와 고객의 등록지, 운송서비스 제공지 등이 다를 때 공급지

- 고객이 영업중인 경우
  - 공급자가 영국, 고객이 프랑스에 속할 때: 물품이 프랑스 내에서 이동하고, 화물운송 및 관련서비스의 공급장소가 프랑스인 경우 → 프랑스가 공급지
  - 공급자가 영국, 고객이 호주에 속할 때: 프랑스에서 수행된 관련 운송 서비스를 통해 상품이 호주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 화물 운송 및 관련 서비스 공급지는 호주
  - 공급자와 고객 모두 영국에 속할 때: 상품이 캐나다에서 중국으로 이동할 경우 → 캐나다, 중국 및 국제해역 등이 서비스 공급지

- 고객이 영업중이 아닌 경우
  - 공급자가 영국, 고객이 프랑스에 속할 때: 화물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공급장소가 프랑스인 경우 → 프랑스가 공급지
  - 공급자가 영국, 고객이 호주에 속할 때: 프랑스에서 관련 운송서비스가 수행되고 상품이 호주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 화물 운송 및 관련 서비스가 호주에서 제공될 경우 공급지는 호주, 영국 혹은 다른 국가에서 제공될 경우 공급지는 프랑스
  - 공급자와 고객 모두 영국에 속할 때: 상품이 캐나다에서 중국으로 이동할 경우 → 캐나다, 중국 및 국제해역 등이 서비스 공급지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41A
(https://www.gov.uk/guidance/vat-place-of-supply-of-services-notice-741a)

2 공급시기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공급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인식한다. 사업용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공급 수행 여부는 ① 해당 재화가 공급자에게서 수요자에게로 이전될 때, ② 재화가 이전되지 않고 공급자가 이를 사용할 때, ③ 재화가 공급수행 여부를 알기 전에 이전될 경우에는, 그 공급의 수행이 확실시되었을 때 결정된다. 재화와 달리 서비스의 공급은 해당 서비스가 실행되었을 때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외에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공급시기 또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표 Ⅶ-8 상품의 유형에 따른 공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사업용	재화	이미 공급된 경우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 재화의 판매뿐만 아니라 임차, 신용판매 및 조건부 판매 계약에 따른 공급도 포함됨
		공급되지 않은 경우	아직 공급되지는 않았으나 계약에 의하여 상품의 공급이 예정된 경우로, 고객이 사용 가능한 날짜
	서비스		서비스가 제공된 날짜 일반적으로 영수증의 발행을 제외한 모든 작업이 완료된 날짜로 간주됨
비업무용	영구적 비업무용도		공급시기는 물품을 가져가거나 목적을 위하여 따로 보관할 때
	사업 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되나 여전히 사업자산의 일부인 경우		각 부가가치세 신고의 마지막 날에 물품이 사용되거나, 사용 가능하도록 결정된 날짜
그외	건설서비스		서비스 수행 시점
	건설계약에 따른 디자인, 자문 및 감독서비스 보류금액의 지불		부가가치세 영수증의 발행 및 지불 시점 중 더 빠른 날짜
	구매자 소유의 공급물품		부가가치세 영수증의 발행 및 지불 시점,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짜
	임차계약 토지에 대한 자유보유권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납부한 날짜 또는 부가가치세 영수증의 발행일 중 빠른 날짜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00
(https://www.gov.uk/guidance/vat-guide-notice-700#apportionment-of-tax-between-business-and-non-business-activities)

Ⅷ. 부가가치세 행정

1. 과세기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지
2. 세금계산서
3. 기장 및 증빙작성
4. 신고와 납부
5. 과세절차 위임규정
6. 부가가치세 상환
7. 부가가치세 환급
8. 확인조사
9. 행정상 제재 및 형벌
10. 부가가치세 행정의 간소화 및 디지털화

Ⅷ. 부가가치세 행정

부가가치세는 2005년 이전까지는 영국의 간접세무국(HM Customs and Excise)에서 운영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장관이 없이 운영되는 부처인 영국 국세청(HMRC, HM Revenue and Customs)에서 관리한다.

1 과세기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지

영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포함하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매 3개월에 걸쳐서 완료된다. 납세대상은 과세가 발생하는 시점인 과세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시점일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비율을 따라야 한다. 납세지는 영국 내에 사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의 공급지에 따라 ① 영국에 본사가 존재하며 다른 고정사업장은 없는 기업의 본사 ② 영국 외에 본사가 존재하며 영국 내에 고정된 사업소가 존재하는 기업의 영국 내 사업소 ③ 고정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업주의 거주지가 영국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세금계산서

가. 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일반소비세로 채택 · 시행하고 있으며, 인보이스(Invoice) 혹은 영수증 등을 세금계산서로서 활용하고 있다. 영국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로는 대부분 인보이스(invoice)가 활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과세거래를 할 경우, 판매와 구매의 기록을 보관하고 회계처리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서식과 관련 규정들은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일 혹은 대금지급일로부터 30일 내에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① 세금계산서 번호, ② 사업체명 및 주소, ③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④ 송장의 날짜 및 기간, ⑤ 거래일, ⑥ 고객명 및 인적사항 등과 함께 재화 및 서비스 품목의 수량 · 세액 · 세액 외 총금액 · 거래유형 · 이용 가능한 현금할인율 및 감면 적용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단, 소매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별 공급가액이 100파운드 이하인 경우 고객이 특별히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한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간이영수증은 기본 세금계산서와 달리 송장의 날짜와 기간, 고객명, 부가가치세 총액과 거래물품별 금액, 품목별 수량과 할인율 등을 제외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Full invoice) 및 간이영수증(Simplified invoice), 수정된 세금계산서(Modified invoice)에 포함되는 정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Ⅷ-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부분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Full invoice)가 사용되며, 수정된 세금계산서(Modified invoice)는 250파운드 이상의 소매 공급 시 사용된다. 간이영수증(Simplified invoice)은 250파운드 이하의 소매 공급 시 사용할 수 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그 외에 다른 공급에 있어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간이계산서는 일부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필요 없는 예외의 경우는 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② 선물로 제공된 상품인 경우, ③ 중고물품과 같이 판매가격이 원구매가격보다 낮은 상품인 경우, ④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자가 발행한 경우가 해당된다.

무역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모든 금액을 파운드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외국의 화폐단위 혹은 외국어로 기재할 경우 ① 영국 내에서 상품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총부가가치세 금액을 파운드화(貨)로 기재하고, ② 세무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문 번역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파운드화 환산을 위해서는 공급시점의 시장환율, 유럽

중앙은행의 환율, 영국 재무부의 기간별(월별) 외환거래 환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기록과 세금계산서는 적어도 6년 이상 보존해야 하며, 관련 회계기록은 정기적으로 국세청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의 경우 영수증의 발행, 수취가 부가가치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한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으나, 탈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표 Ⅷ-1 세금계산서(invoice)에 포함되는 정보

세금계산서에 포함되는 정보	세금계산서 (Full invoice)	간이영수증 (Simplified invoice)	수정된 계산서 (Modified invoice)
고유번호 (Unique invoice number that follows on from the last invoice)	○	○	○
사업체명 및 주소	○	○	○
VAT 등록번호	○	○	○
날짜 및 기간	○	×	○
거래일 (The tax point or time of supply, 날짜가 거래일과 다를 경우 명시)	○	○	○
고객명 혹은 거래명과 주소	○	×	○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설명	○	○	○
VAT를 제외한 거래 총액	○	×	○
부가가치세 총액	○	×	○
거래물품별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	×	○
상품유형별 수량	○	×	○
상품 품목당 할인율	○	×	○
상품 품목당 부과된 부가가치세 비율 (영세율 혹은 면세품목의 경우 이를 기재)	○	○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	○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record keeping
(https://www.gov.uk/vat-record-keeping/vat-invoices)

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자가발행, Self-billing)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는 상품공급자인 사업자와 고객 간의 계약이라 할 수 있다. 고객과 공급업체 모두 부가가치세를 등록한 상태일 때, 고객이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불한 뒤 공급자에게 해당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부가가치세 등록을 신고한 사업자인 고객이 거래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이에 대하여 세관에 고지하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품의 공급자와 고객 간의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조건하에서 공급업체와 자체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 공급자와 고객 모두가 계약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 공급자와 고객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세금계산서의 자가발행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거래기간과 같은 12개월이지만, 공급업체와 고객 간에 체결한 모든 사업 계약이 종료되는 일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3 기장 및 증빙작성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체는 발행하였거나 받은 모든 invoice(원본 혹은 전자사본), 자체청구계약, 자체청구공급업체의 이름, 주소 및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직불 또는 신용거래 여부, 수입 및 수출 여부,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항목에 대한 기록, 개인용도로 제공하였거나 재고에서 가져간 물품의 기록, 구매 혹은 판매한 모든 면세 혹은 감면세율 품목에 대한 기록, 부가가치세 계정에 대한 기록

등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이 외에 은행명세서, 지불전표 등의 일반적인 사업 기록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EU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VAT MOSS[3]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회계체계, 공급시간, 모든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기록 등도 추가로 보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는 부가가치세 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 계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규칙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총부가가치세 판매액, 총부가가치세 구매액,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금액,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금액, 인수 혹은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액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오류를 발견한 날짜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송장 발부 및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을 위하여 거래시기 혹은 공급일을 기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표 Ⅷ-2〉와 같이 기록한다. 공급일은 상품의 경우 상품이 발송, 혹은 제공된 날짜로 간주하며,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된 날짜로 한다.

표 Ⅷ-2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거래시기의 기록

세금계산서의 발급 유형	거래시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상품의 공급일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송장날짜
공급일로부터 15일 이후에 발행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이 이루어진 날짜
상품의 공급 전 세금계산서 발행 혹은 대금 지불	대금 지불일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둘 중 빠른 날짜)
공급 전에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대급 지불일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record keeping (https://www.gov.uk/vat-record-keeping/vat-invoices)

3) VAT MOSS(VAT Mini One Stop Shop): 다른 EU 회원국의 소비자에게 국경 간 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하는 영국 내 사업체의 경우, EU 외부의 사업체가 EU 소비자에게 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디지털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VAT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때 공급지는 소비자의 국가가 된다.

4 신고와 납부

가. 부가가치세의 신고

영국은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의 신고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동시에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는 1년에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환급을 신청한다. 납세자는 과세기간의 마감일 전 30일의 기간 동안 과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금액과 환급금액을 신고하며, 이후 1년 혹은 12개월 동안에는 완결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과세기간 말에 이행되며, 과세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과세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거래를 대상으로 과세시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에 따라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계정상의 ① 과세기간 동안에 징수된 매출세액, ② 과세기간 동안 지불된 매입세액, ③ 지불 혹은 상환해야 하는 총세액, ④ 타 EU 회원국에서의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⑤ 타 EU 회원국으로부터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금액 등 관련 정보를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계산 결과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을 관할 관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의 납부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에 마감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간회계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체와 부가가치세 계좌를 활용하여 결제하는 사업체, VAT MOSS를 활용하는 사업체 간에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이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납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연간회계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부가가치세 회계기간은 12개월로, 1년에 한 번 회계기간의 종료 이후에 부가가치세의 최종 납부 및 환급이 이루어진다.

표 Ⅷ-3 연간회계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납부마감일(2019년 기준)

등록일	마감일
월별 납부	4~11월 및 12월 말
분기별 납부	4월, 7월 및 10월 말
최종 납부	12월로부터 2개월 이내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Annual Accounting Scheme (https://www.gov.uk/vat-annual-accounting-scheme/return-and-payment-deadlines)

반면 HMRC의 계좌를 통하여 1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230만파운드 이상을 지불하고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분기별로 환급을 받는 사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HMRC의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일은 납부기간의 종료 날짜와 관계없이 모든 부가가치세 분기별로 두 번째 및 세 번째 달의 마지막 근무일이 된다.

VAT MOSS 계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체의 경우 분기별 종료일 이후 20일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마감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전일 근무일에 HMRC의 은행계좌에 지불하여야 한다.

표 Ⅷ-4 VAT MOSS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납부마감일(2019년 기준)

분기별 종료일	마감일
3월 31일 종료되는 분기	4월 20일
6월 30일 종료되는 분기	7월 20일
9월 30일 종료되는 분기	10월 20일
12월 31일 종료 분기	1월 20일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Pay your VAT bill (https://www.gov.uk/pay-vat/moss)

모든 사업체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마감일까지 결제금액을 HMRC의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시에 지불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포함한 추가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가 접수되었는지는 부가가치세 온라인계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국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Domestic Reverse Charge)

국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역과세제도)는, 사기 및 탈세 등의 범죄에 대비하는 방지책으로서의 부가가치세 납부제도로 2007년에 도입되었으며「부가가치세법」제55조의 A절을 근거로 한다. 역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흔히 부가가치세 사기가 쉽게 일어나는 휴대폰, 컴퓨터칩, 가스, 전기 등의 도매, 배출권 및 통신서비스, 재생가능에너지 인증서비스 제공 등이다. 매입자납부제도는 5,000파운드 이상의 휴대폰 및 컴퓨터칩 등 역과세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상품을 영국 내에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공급자는 사업목적으로 해당연도에 재판매하는 재화를 구매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할 경우 사업자가 아닌 고객, 즉 재판매를 위하여 상품을 매입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없으나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그 결과, 고객인 매입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절차를 통해 해당 부가가치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5 과세절차 위임규정

사업자는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과세절차를 처리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HMRC는 사업자가 과세절차를 위임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행정과 관련하여 고지한다. 사업자가 과세절차를 위임할 대리인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HMRC의 온라인 인증서비스 혹은 서면제출을 통하여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온라인 인증이 아닌 서면제출을 통한 위임 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등 납세자의 고유 번호, 위임을 승인하고자 하는 사람 혹은 조직의 인적사항, 사업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리인은 전문회계사 혹은 세무사가 될 수도 있지만, 사업자의 친구 혹은 친척, 자원활동조직의 중개자 등이 될 수도 있다. 대리인은 세금계정의 확인 및 업데이트, 세금환급청구, 세금의 확인 및 업데이트 등을 수행하며, 이와 별개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계속 사업자에게 존재한다.

6 부가가치세 상환

사업자가 상품의 공급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 지불한 금액보다 더 적은 부가가치세를 고객에게 부과한 경우, HMRC는 사업자에게 차액을 상환한다. 부가가치세의 상환은 일반적으로 HMRC가 환급신청을 받은 후 해당 환급신청에 대하여 평가하는 기간인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상환이 결정되면 HMRC는 사업자의 은행계좌로 차액을 송금하거나 사업자의 주소로 수표를 발송한다. 상환의 결정이 30일 이내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상환금액의 5% 혹은 50유로 중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7 부가가치세 환급

가. 부가가치세의 환급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체는 1년에 4회, 매 3개월마다 HMRC에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환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단,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연간회계제도(Annual Accounting Scheme)를 시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고한

마지막 수익을 기준으로 청구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한 재화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지불한 모든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있으며, 해당 구매가 개인적인 용도 또한 포함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Box 8〉과 같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비율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Box 8 개인적 · 사업적 용도 모두에 사용되는 재화 혹은 서비스에 대한 환급 예

- 핸드폰의 사용
  - 휴대전화 통화의 절반은 개인용으로, 절반은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구매가격 혹은 사용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집안 면적의 20%를 활용하여 재택근무지로 활용하는 경우
  - 재택근무자로서 집 바닥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공과금 중 20%를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음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Reclaiming VAT(https://www.gov.uk/reclaim-vat)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사업자는 총판매 및 구매금액, 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금액,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금액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금액과 환급액을 신고하면, HMRC는 이에 대하여 평가한 후 환급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금액을 고지한다. 이때 고지된 부가가치세 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사업자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HMRC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신청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사업자가 이전에 의도적으로 환급금액을 더 많이 신청하지 않았고 4년 이내의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환급 신청 시 해당 환급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오류로 인한 금액이 1만유로 이하이거나 오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매출액의 1%(최대 5만유로) 이하인 경우 다음 환급 신청 시 신청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오류의 조정을 함께 신청한다. 단, 환급오류 금액이 1만유로 이상이거나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오류의 경우 사업자가 환급오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HMRC의 오류수정부서에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부주의 혹은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HMRC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중과세할 수 있다.

영국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가 파산하였거나, 종교적 이유 혹은 연령, 장애, 거주지역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HMRC의 부가가치세 납부 혹은 환급을 위한 온라인 계정을 통하여 진행된다. 파산하였더라도 파산을 선고하였으나 거래가 계속되는 경우, 신탁 등을 통하여 상환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납부 혹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의 환급 처리를 해야 한다. 단, 접대비, 부가가치세 고정요율을 사용하는 사업체의 구매, 업무용이 아닌 자동차의 구매 및 수리, 연료비, 직원들의 출장 외 여행경비, 부가가치세 부분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를 위한 자본재제도 (The Capital Goods Scheme for VAT)

토지, 컴퓨터 및 관련 장비, 항공기와 선박 등 사업을 위하여 고가의 자본재를 취득, 공급하거나 부가가치세 등록 시 이미 해당 재화를 보유한 경우 자본재제도의 적용을 통하여 보다 많은 환급액을 확보할 수 있다. 자본재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자산에는 토지, 건물 및 토목공사용 자재, 컴퓨터 및 컴퓨터 장비, 항공기, 선박, 보트 및 기타 선박 등이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를 위한 자본재제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과세대상기간 동안 25만파운드 이상을 소비할 경우 적용 가능하다.

자본재가 과세 가능한 재화의 생산과 공급에만 사용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자본재의 구매를 위하여 지불한 모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본재를 부분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면제 혹은 비사업용 상품의 제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이 환급액이 된다.

8 확인조사

부가가치세 담당 공무원은 사업체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기록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자가 적정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환급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방문하기 7일 전에 방문을 통지하고,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 소요시간 및 확인하고자 하는 구역 등을 확인한다. 그러나 HMRC가 방문을 통보하지 않거나, 전화통화만으로 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절차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업자는 감사일자의 지연을 요청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 관련 감사의 빈도는 사업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과 관련하여 불이행 및 신고지연 등 법률 위반 행위가 존재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방문 이후 HMRC는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기록의 개선사항, 부가가치세 계정에 대한 수정사항, 부과가치세 법률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 확인 및 고지한다. 또한 사업자는 HMRC의 고지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9 행정상 제재 및 형벌

가. 부가가치세 등록과 관련한 제재 및 형벌

영국에서 부가가치세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매월 말 지난 12개월간의 과세대상 물품액이 등록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신고기간이 지난 이후 등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등록신고기간이 지나고 등록한 경우의 과태료는 최소 50파운드 이상으로, 신고 경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의 요율이 달라진다. 과태료는 서면으로 고지되며, 해당 과태료에 대하여 사업자는 항소할 수 있다.

표 Ⅷ-5 등록기일 이후 등록 시 과태료율(2019년 기준)

등록일	페널티율
등록신고기간 이후 9개월	5%
등록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상 18개월 이하	10%
등록신고기간 이후 18개월 이상	15%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00/41
(https://www.gov.uk/guidance/late-registration-penalty-for-vat-notice-70041)

사업자가 과태료 금액이 통지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할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 경감, 인상될 수 있다. 사업자가 가족 혹은 동업자의 사망, 질병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항소할 경우, 과태료는 전액 면제된다. 세금의 납부 혹은 과태료의 지불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자가 의도하지 않은 경우, 즉 형벌의 경감이 필요한 환경인 경우 과태료는 경감될 수 있다.

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납세한 부가가치세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은 경우, HMRC가 나중에 오류를 발견하면 미지급 혹은 초과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3%의 이자가 추가적으로 청구된다. 또한, 사업자가 납부 및 환급을 신고한 이후 HMRC로부터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지나치게 낮음에도 이를 고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의 추가 과태료 혹은 HMRC 평가 금액의 3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허위신고가 반복될 경우, HMRC의 판단에 따라 허위신고가 반복된 기간 동안 사업자가 잘못 신고한 금액의 1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다.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제재 및 형벌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환급 신청이 마감 기간 내에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를 포함하여 가중과세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및 환급신청 불이행 시 HMRC는 사업자에게 12개월의 재신청 기간을 제공하며, 사업자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납부금액을 다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12개월 이후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가중과세한다. 첫 번째 불이행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2개월 이후부터는 추가요금이 〈표 Ⅷ-6〉과 같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HMRC의 허가 없이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환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40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부주의로 인하여 혹은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도 과소하게 부과된 부가세액 혹은 과대환급된 금액의 100%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

표 Ⅷ-6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마감일 경과 시 가중과세

경과기간	연간 매출액이 150,000파운드 미만인 사업체에 대한 가중과세	연간 매출액이 150,000파운드 이상인 사업체에 대한 가중과세
2개월 이내	없음	2% (환급금액이 400파운드 미만인 경우 추가요금 없음)
3개월 이내	2% (환급금액이 400파운드 미만인 경우 추가요금 없음)	5% (환급금액이 400파운드 미만인 경우 추가요금 없음)
4개월 이내	5% (환급금액이 400파운드 미만인 경우 추가요금 없음)	10% 혹은 30유로 (둘 중 더 많은 금액)
5개월 이내	10% 혹은 30유로 (둘 중 더 많은 금액)	15% 혹은 30유로 (둘 중 더 많은 금액)
6개월 이상	15% 혹은 30유로 (둘 중 더 많은 금액)	15% 혹은 30유로 (둘 중 더 많은 금액)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Returns
(https://www.gov.uk/vat-returns/surcharges-and-penalties)

10 부가가치세 행정의 간소화 및 디지털화

영국은 부가가치세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연간회계제도 및 부가가치세 현금회계제도, 고정세율제도, 부가가치세 소매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회계를 디지털화하는 규칙을 제정하여(Rules for Making Tax Digital for VAT)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환급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가. 행정의 간소화

1) 부가가치세 연간회계제도(VAT Annual Accounting Scheme)

일반적으로 영국 내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체들은 1년에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의 지불 및 환급을 신청하나, 연간회계제도를 통하여 관련 행정 처리를 크게 간소화할 수 있다. 연간회계제도를 신청한 사업자는 과세대상기간의 마지막 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청구되는 부가가치세를 선불로 납부하고,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는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의 예상매출액이 135만파운드 이하인 경우 온라인 계정 및 서면제출을 통하여 연간회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이전에 해당 제도를 활용하였으나 더 이상 활용하지 않은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업체의 일부 부서 혹은 그룹만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혹은 지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파산한 경우에는 연간회계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이 연간회계연도 말에 160만파운드 이상인 경우 연간회계제도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 현금회계제도(VAT Cash Accounting Scheme)

대부분의 사업체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금액은 판매 세금계산서와 구매 세금계산서 간의 차액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금액을 보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회계체계를 사용하면, 납세자인 사업자의 고객이 사업자에게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사업자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의 예상매출액이 135만파운드 이하인 경우 온라인 계정 및 서면제출을 통하여 현금회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단, 부가가치세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지난 부가가치세의 납부 혹은 환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난 12개월간 부가가치세 회피 등 부가가치세 제도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현금회계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지불조건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생 이전에 거래가 발생한 경우, 임대 · 대여 · 조건부 판매 혹은 신용판매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경우, EU 내에서 상품을 수입한 경우 등의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현금회계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존의 부가가치세 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현금회계제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결제된 부가가치세를 보고하고 납부한 뒤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 고정세율제도(VAT Flat Rate Scheme): 간이과세제도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각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되나, 고정세율제도를 사용할 경우 사업의 유형별로 고정된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상품의 공급비용이 매출의 2% 혹은 연간 1천파운드 이하로 매우 적어 '비용이 제한된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16.5%의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이 제한된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유형별 고정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금액을 계산하며 사업유형별 고정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Ⅷ-7 사업유형별 부가가치세 고정세율

(단위: %)

사업유형	현행 VAT 고정세율	사업유형	현행 VAT 고정세율
회계 및 부기	14.5	식품제조	9
광고	11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제조업	9.5

〈표 Ⅷ-7〉의 계속

사업유형	현행 VAT 고정세율	사업유형	현행 VAT 고정세율
농업 관련 서비스	11	원사, 직물 및 의류제조업	9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활동(Activity)	12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8
건설업, 토목 및 구조엔지니어링, 측량사업	14.5	채굴 및 채석	10
동물의 사육 및 관리	12	포장	9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영리사업(business) 서비스	12	사진	11
레스토랑, 테이크아웃 등을 포함하는 케이터링 서비스	12.5	우체국	5
컴퓨터 및 IT 컨설팅, 데이터 처리	14.5	인쇄	8.5
컴퓨터 수리	10.5	출판	11
엔터테인먼트 혹은 저널리즘	12.5	펍	6.5
부동산 중개업 혹은 자산관리서비스	12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부동산업	14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농업 혹은 경작 사업	6.5	개인 또는 가정용품의 수리	10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및 비디오 제작	13	차량수리	8.5
금융서비스	13.5	식품, 제과, 담배, 신문 및 아동복의 소매업	4
임업 및 낚시	10.5	의약품, 의료용품, 화장품, 또는 세면용품의 소매업	8
일반 건축 및 건설서비스	9.5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소매업	7.5
미용 또는 기타 미용치료 서비스	13	차량 및 연료 관련 소매업	6.5
물품 대여업	9.5	비서서비스	13
호텔 및 숙박시설	10.5	사회사업	11
조사 및 보안	1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8.5
노동전용 건축 및 건설서비스	14.5	택배, 화물, 택시를 포함한 운송 및 보관업	10

〈표 Ⅷ-7〉의 계속

사업유형	현행 VAT 고정세율	사업유형	현행 VAT 고정세율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12	여행사	10.5
변호사 및 법률 서비스	14.5	수의학	11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및 기타문화활동	9.5	농산물 도매업	8
경영컨설팅	14	통밀음식의 제공	7.5
가공금속제품의 제조	10.5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도매업	8.5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Flat Rate Scheme
(https://www.gov.uk/vat-flat-rate-scheme/how-much-you-pay)

고정세율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은 〈Box 9〉와 같다. 고정세율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표준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시와 다른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에 사업유형별로 다른 고정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Box 9 고정세율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총매출액에 부가가치세 고정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 세금을 계산함
  - 사업자가 고객에게 £1,000의 물품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 표준세율(20%)을 적용하여 총 £1,200를 청구
  - 사업자가 요리사인 경우, 그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정세율은 12.5%

= 고정세율에 따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1,200의 12.5%인 £150

* 이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총매출액은 표준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시의 매출액과 다름: 고정세율 적용 시의 매출액은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임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Flat Rate Scheme
(https://www.gov.uk/vat-flat-rate-scheme/how-much-you-pay)

4) 부가가치세 소매회계제도(VAT Retail Scheme)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계정에 기록하나, 부가가치세 소매회계제도의 경우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가가치세 소매회계제도는 ① 매각시점제도(Point of Sale Scheme), ② 배분제도(Apportionment Scheme) ③ 직접계산제도(Direct Calculation Scheme)로 구분할 수 있다. 매각시점제도는 소매업자가 물건을 판매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식별하고 기록하는 방식이며, 배분제도는 소매업자가 재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직접계산제도는 매출액의 일부에 일정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에는 다른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매회계제도는 현금회계제도 및 연간회계제도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의 매출액이 130만파운드 이하인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매각시점제도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 시점에 판매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 동안 각 부가가치세 세율에 대한 모든 매출을 합산한 후, 표준세율인 20%를 적용하는 물품의 매출은 6으로 나누고, 경감세율인 5%를 적용하는 물품의 매출은 21로 나눈 금액을 모두 합하여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기록한다. 매각시점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 계산은 〈Box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Box 10 매각시점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

- 24,000파운드 상당의 표준 부가가치세 세율(20%)이 적용되는 상품과, 105파운드 상당의 경감세율(5%)이 적용되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

  - £24,000 / 6 = £4,000
  - £105 / 21 = £5

  = 부가가치세 거래 대상 기간 동안 총 £4,005를 부가가치세로 기록해야 함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retail schemes
(https://www.gov.uk/vat-retail-schemes/point-of-sale-scheme)

배분제도의 경우, 사업자가 재판매용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스로 만들거나 키운 상품, 출장요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배분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체는 과세대상거래의 매출액이 100만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다.

Box 11 할당체계를 활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

- 과세대상거래 기간 동안 표준세율 20%를 적용하는 16,000파운드의 상당의 상품과, 5% 세율을 적용하는 1,000파운드 상당의 상품, 영세율을 적용하는 10,000파운드 상당의 상품을 구입한 경우: 총구매액은 27,000파운드, 총판매액은 34,000파운드가 됨

  - (£16,000 / £27,000) x £34,000 / 6 = £3,358.02
  - (£1,000 / £27,000) x £34,000 / 21 = £59.96

  = 부가가치세 거래 대상 기간 동안의 총부가가치세 금액은 £3,417.98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retail schemes
(https://www.gov.uk/vat-retail-schemes/apportionment-scheme)

배분제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 동안 재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상품의 총금액을 각 부가가치세 세율에 대하여 계산하고, 각 세율별 구매 총계를 모든 구매의 총계로 나누어 총판매액을 곱한 뒤, 표준세율에 해당하는 상품의 구매액에 대해서는 6으로, 5%를 적용하는 물품의 구매액에 대해서는 2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배분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 계산 방식은 〈Box 11〉을 통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직접계산체계의 경우, 일정한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는 판매거래의 비중이 적고 다른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는 판매거래가 높은 경우 사용하며, 할당체계를 적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우 과세대상거래의 매출액이 100만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다.

직접계산체계의 부가가치세는 소수 또는 다수 상품에 대한 예상판매가격(ESP, Expected Sales Price)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 동

안 총판매액에서 영세율에 해당하는 총예상판매가격과 5%의 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의 예상판매가격을 공제한 뒤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의 총예상판매금액을 6으로 나누고, 이전에 공제한 5%의 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의 금액은 총 21로 나눈 뒤 이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Box 12 직접계산체계를 활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

- 과세대상거래 기간 동안 총매출액 £25,000
- 영세율 제품의 예상판매가격 = £2,500 공제
- 5% 세율 제품의 예상판매가격 = £105 공제
- 표준세율(20%)에 해당하는 상품의 예상판매액 = £22,395

  - £22,395 / 6 = £3,732.50
  - £105 / 21 = £5

  = 부가가치세 거래 대상 기간 동안의 총부가가치세 금액은 £3,737.50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retail schemes
(https://www.gov.uk/vat-retail-schemes/direct-calculation-scheme)

나. 디지털화

영국은 2019년 4월 1일부터 85,000파운드 이상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을 가진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체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제행정의 디지털화 규칙(Rules for Making Tax Digital for VAT)을 적용하였다. 이는 세제행정의 간소화 및 디지털화를 통하여 세제행정상의 오류를 줄이고 보다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에 필요한 회계기록을 디지털화하여 보관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점이 존재한다. 영국 정부는 세제행정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2020~2021년에 6억 6천만파운드의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

4) https://www.sage.com/en-gb/blog/making-tax-digital-for-vat/

부가가치세 세제행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과세대상 사업자들은 사업의 회계기록 및 세금납부기록을 디지털화하여 보관하고, MTD(Make Tax Digital)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회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세금의 납부 및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련 회계기록의 디지털화는 2019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하는 과세대상기간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부 연기가 가능한 사업자(연간회계제도 사용자, 비영리단체,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추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공기업, 해외거래자 등)에 한하여 2019년 10월부터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세제행정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Box 13 디지털화하여 보관해야 하는 기록

- 사업체명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및 관련하여 사용하는 제도(소매제도 등)의 세부사항
- 공급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 환급조정
- 공급시점 혹은 거래기간
- 공급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세율
- 자선모금활동 및 제3자사업 등 주요 사업 외의 다양한 사업 등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00/2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at-notice-70022-making-tax-digital-for-vat/vat-notice-70022-making-tax-digital-for-vat)

세제행정의 디지털화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면제대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의 매출이 85,000파운드 미만인 사업자, 파산을 신청한 사업자 등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면제된다. 또한, 연령, 장애 혹은 거주지역 등으로 인하여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 혹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와 종교적인 이유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신청 및 국세청의 승인을 통하여 마찬가지로 면제 가능하다.

다. 국경 간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 간소화 (VAT MOSS, VAT Mini One Stop Shop) 제도

영국의 사업자가 다른 EU 회원국의 소비자에게 특정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소비지국에서의 부가가치세 등록이 필요 없이 영국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Unoin VAT MOSS 와 Non-Union VAT MOSS로 구분된다. 이 중 영국을 포함하는 EU 기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Unoin VAT MOSS로, ① 영국에 기반을 두거나 영국에 고정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비EU 사업자, ② 영국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 ③ 다른 EU 회원국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VAT MOSS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각 판매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Box 14 디지털화하여 보관해야 하는 기록(VAT MOSS)

- 판매국가
- 서비스 제공 날짜
- 과세액의 증가 혹은 감소
- 부가가치세 세율
- 부가가치세 금액 및 사용한 통화
- 사업자에게 지불한 금액과 지불 날짜
-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사업자가 지불한 금액
-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정보
- 고객명 및 인적사항 등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VAT Notice 700/2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at-notice-70022-making-tax-digital-for-vat/vat-notice-70022-making-tax-digital-for-vat)

Ⅸ. 시사점

Ⅸ. 시사점

영국은 2015년에 도입된 국경 간 디지털 서비스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 간소화 제도를 시작으로, 2019년 4월에는 모든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세행정을 발전시킴으로써 세수 확보 및 과세형평성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부가가치세 과세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과세행정절차는 보다 단순화하고 간소화한 반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및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통하여 조세회피, 탈세 및 사기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책은 강화하였다. 또한 신고와 납부불이행, 허위신고, 오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세행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하는 등 과세행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방책과 수습책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와 역과세제도, 매입자 납부제도 등 EU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토대로 하는 영국의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들은 대부분 한국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다. 국경 간 디지털 서비스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 간소화 제도 또한 2014년의 세법개정을 기점으로 한국에 도입되었으며, 한국 국세청의 홈택스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운영의 적절성, 조세행정의 간소화 및 단순화를 위하여 도입된 다양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조세납부 및 과세행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 다양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과 조세행정상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수습책을 함께 활용하는 영국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이러한 논의를 보다 균형잡힌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박정수(2009),『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 편』,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2002),『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국제거래 증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개선방안 연구』.

Clark, T., & Dilnot, A.(2002), *Long-term trends in British taxation and spending*.

Crawford, I., Keen, M., & Smith, S.(2010), "Value added tax and excises," *Dimensions of tax design: the Mirrlees review*, 1, pp. 275~362.

Sinn, H. W.(1990), "Tax harmonization and tax competition in Europe,"(No. w324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irrlees, J. A., & Adam, S.(2010), *Dimensions of tax design: the Mirrlees review,* Oxford University Press.

James, S.(2000), "VAT/GST: the UK experience revisited," *Revenue Law Journal,* 10(1), p. 6628.

James, S., & Alley, C.(2008), *Successful tax reform: the experience of value added tax in the United Kingdom and goods and services tax in New Zealand*.

OECD(2018), Revenue Statistics 2018 - The United Kingdom.

Whalley, J.(1975), "A general equilibrium assessment of the 1973 United Kingdom tax reform," *Economica*, 42(166), pp. 139~161.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
Eur-Lex(Access to European Union law), https://eur-lex.europa.eu/
OECD Statistics, http://stat.oecd.org

부 록

영국 부가가치세법 목차

제1장 세금의 부과

부가가치세의 시행 및 세율

제1조 부가가치세
제2조 부가가치세 세율
제3조 과세대상 및 등록
제3A조 전기, 통신, 방송서비스의 공급: 특별회계제도

영국 내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

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의 범위
제5조 공급의 정의: 재무부 명령에 의한 변경
제6조 공급시기
제7조 상품의 공급지
제7A조 서비스의 공급지
제8조 해외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
제9조 공급자 혹은 용역의 수령자가 속한 공급지
제9A조 영국 외 공급자에 의한 가스, 전기, 온열 혹은 냉방 공급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상품 매입
제10조 회원국로부터의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위
제11조 회원국으로부터의 상품 매입에 대한 정의
제12조 상품의 매입 시기
제13조 상품의 매입 장소
제14조 다른 회원국에 속한 공급자로부터의 매입

(EU) 회원국 외의 국가로부터의 상품 수입

제15조 일반적인 수입품의 공급
제16조 관세법의 적용
제16A조 우편소포
제17조 관세자유지역 규정

보세창고제도(Warehousing regime) 적용 상품

제18조 상품 매입 혹은 공급의 시점과 장소
제18A조 보세창고(Fiscal warehouse)를 통한 공급 및 보관
제18B조 보세창고를 통한 공급상품에 대한 세금 경감
제18C조 보세창고(warehouse) 및 보세창고 관련 서비스
제18D조 창고 물품의 수거 및 그에 대한 책임
제18E조 보세창고에 보관된 상품의 결함(Deficiency in fiscally warehoused goods)
제18F조 18A부터 18E에 대한 부칙

세액 결정

제19조 상품 혹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20조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상품 매입에 대한 세액
제21조 수입품에 대한 세액
제22조 특정 상품에 대한 세액
제23조 빙고게임, 복권 등을 제외한 오락게임(상금이 걸려있는 경우 포함)에 대한 세액
제23A조 오락게임에 대한 정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제24조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제25조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기간 및 공제액을 고려한 납부
제26조 제25조에 의거하여 공제된 매입세액

제26A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제26AA조 파산에 따라 제26A조에 의거하여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에 대한 면제
제26AB조 제55조에 의거한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
제26B조 고정세율제도
제27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수입
제28조 부가가치세 계정을 통한 납부
제29조 재화 혹은 용역의 수령자가 제공하는 세금계산서

제2장 세금의 경감(reliefs), 면세(exemptions), 상환(repayments)

일반적인 면세 등

제29A조 경감세율
제30조 영세율
제31조 공급 및 매입에 대한 면세
제32조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세금 경감
제33조 특정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환급
제33A조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33B조 교육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33C조 제33D조에 포함되는 기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33D조 제33조를 적용하는 기부
제33E조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을 타인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Power to extend refunds of VAT to other persons)
제34조 자본재
제35조 특정 건물의 건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36조 대손상각(bad debts)

매입

제36A조 경감세율을 적용받는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세
(Relief from VAT on acquisition if importation would attract relief)

수입, 해외사업 등

제37조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38조 과세대상자에 의한 물품 수입
제39조 해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환
제39A조 부가가치세 상환 청구를 타 회원국에 전달하기 위한 신청서
제40조 다른 회원국에게 공급되는 새로운 운송 수단에 대한 환급

제3장 특정 경우의 부가가치세법 적용

제41조 정부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41A조 공공기관에 의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제42조 지방정부
제43조 기업집단(Groups of companies)
제43A조 집단의 자격
제43B조 집단의 자격 변경 권한
제43C조 집단의 신청
제43D조 멤버십의 종료
제44조 집단에 대한 공급
제45조 파트너십
제46조 일부 사업부 혹은 비법인단체, 개인대표 등이 수행하는 사업
제47조 대리자에 의한 공급(Agents etc.)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및 보안(VAT representatives and security)
제49조 부가가치세의 양도(Transfers of going on concerns)
제50조 재래시장(Terminal markets)
제50A조 이윤에 대한 부가가치세(Margin schemes)
제51조 토지 및 건물
제51B조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액면가액 바우처
제51C조 2019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바우처
제51D조 2019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인지
제52조 거래인지제도(주로 소매업체 등에서 발행한 매장에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래인지를 의미)

제53조 여행사
제54조 농부 등
제55조 금에 대한 세금을 보고의무가 있는 소비자
제55A조 내부거래사기 등에 이용된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있는 소비자
제56조 개인사용연료
제57조 개인사용을 위한 연료공급에 대한 보수 결정

제4장 세무행정, 징수, 집행

일반 행정 규정

제58조 부가가치세의 관리 및 징수와 관련한 일반 조항

조세회피의 고시

제58A조 부가가치세 회피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Disclosure of avoidance schemes)
제58B조 수표에 의한 지불

기본 부가금 및 기타 벌금, 형사처벌

제59조 기본 부가금(surcharge)
제59A조 기본 부가금: 계정을 통한 납부
제59B조 제59조와 제59A조 간의 관계
제60조 부가가치세 탈세(evasion): 부정과 관련한 행위
제61조 부가가치세 탈세: 관리자의 책임 등
제62조 영세율 적용 품목 등과 관련한 잘못된 자격 및 인증
제63조 허위신고 혹은 태만으로 인하여 동일한 혹은 초과회계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의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한 벌금
제64조 반복적인 신고 오류
제65조 EC의 매출전표 혹은 제55A조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오류
제66조 EC의 매출전표 혹은 제55A조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미제출

제67조 세금계산서의 미통지 및 미승인발급
제67A조 통제물품계약 위반
제68조 소유권 계약 위반
제69조 규정 조항의 위반
제69A조 금 거래와 관련한 기록 보관 요건 등의 위반
제69B조 지침에 따라 부과된 기록 보관 요건의 위반
제69C조 부가가치세 사기와 관련한 거래
제69D조 제69C조에 따른 벌금: 세무공무원의 책임
제69E조 제69C조에 따른 벌금에 책임이 있는 처벌대상자의 정보 공개
제70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9A조 및 제69C조에 의거한 벌금의 경감
제71조 제59조부터 제70조까지의 조항에 대한 해석
제72조 위법행위

부가가치세 및 기타 예정상환금액의 평가

제73조 환급불이행 등
제74조 부가가치세 이자평가를 통한 회수 혹은 회수가능
제75조 비과세자가 특정 상품을 취득한 경우의 평가
제76조 위약금, 이자, 또는 과징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평가
제76A조 제76조: 특별회계제도와 관련한 경우
제77조 평가기간의 제한 및 보충 평가

타사의 미지급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적책임

제77A조 부가가치세 미납부 공급망 내의 거래자에 대한 공동 및 개별 책임

인터넷 거래(Online marketplaces)

제77B조 공동 및 개별 책임: 조사관에 의하여 규정 미준수로 판명된 판매자들
제77BA조 공동 및 개별 책임: 부록1A의 등록요건을 위반한 영국 외 판매자
제77C조 제77B조 및 제77BA조에 따른 공동 및 개별책임에 대한 평가

제77D조 제77B조 및 제77BA조에 따른 공동 및 개별책임에 대한 이자
제77E조 부가가치세 등록번호의 표시

조사관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 상환에 대한 추가금 등

제78조 공식적인 오류가 발생한 경우의 추가금
제78A조 추가금의 초과납부에 대한 평가
제79조 특정 납부 및 환급의 지연과 관련한 상환 보충
제80조 과대평가 혹은 과다지급된 부가가치세의 공제 또는 상환
제80A조 변제고객에 대한 약정
제80B조 제80A조의 계약에 의거한 금액의 평가
제81조 신용거래 및 상계방식에 의한 이자

제5장 심리 및 항소

제82조 "재판소"의 의미
제83조 항소
제83A조 심리의 제공
제83B조 심리 요구권
제83C조 HMRC의 검토
제83D조 기간의 연장
제83E조 기간초과심리
제83F조 심리절차 및 내용 등(Nature of review etc)
제83G조 항소제기
제84조 항소와 관련한 추가 조항
제85조 합의에 의한 항소 해결
제85A조 항소결정에 따른 세금납부
제85B조 추가 항소가 있는 경우의 세금납부
제86조 항소법원에 항소
제87조 등록 또는 기록된 재판소 결정의 집행 등

제6장 부가조항

부가가치세 세율의 변경 및 관련 정보의 고시

제88조 세율의 변경 등에 따른 공급
제89조 부가가치세 변경에 따른 계약 조정
제90조 1968년의 한시적 세금징수법에 따른 결의안 불이행
제91조 통계적 목적에 따른 정보공개

해석조항

제92조 다른 회원국의 법률에 따른 과세
제93조 다른 회원국 등에 관한 영역
제94조 '사업'의 의미
제95조 '새로운 운송 수단'의 의미
제96조 기타 해석 조항

부가조항

제97조 명령, 규칙 및 규정
제97A조 공급지: 경과조치
제98조 통지서비스
제99조 북아일랜드 정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100A조 유보 및 경과조치, 주요 개정 및 폐지
제101조 법적효력의 발생 및 범위(Commencement and extent)
제102조 법령명(short title)

별첨 A1 경감세율 부과
별첨 1 과세대상 공급의 등록: 영국 내 설립
별첨 1A 과세대상 공급에 대한 등록: 영국 외 지역에 설립
별첨 2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공급에 대한 등록
별첨 3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매입에 대한 등록

별첨 3A 부가가치세 상환 청구 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등록
별첨 3B 전기, 통신 및 방송서비스: 비통합회계제도
별첨 3BA 전기, 통신 및 방송서비스: 통합회계제도
별첨 4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으로 취급되는 사항
별첨 4A 서비스의 공급지: 특별규정
별첨 5 수령지에서 공급된 서비스
별첨 5A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상품(Goods Eligible to be Fiscally Warehoused)
별첨 6 조세평가: 특정 경우
별첨 7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매입에 대한 조세평가: 특정 경우
별첨 7A 경감세율의 적용
별첨 8 영세율
별첨 9 면세
별첨 9A 조세회피 방지 조항: 집단
별첨 10 토지 및 건물
별첨 10A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액면가액 바우처
별첨 10B 2019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바우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별첨 11 세무행정, 징수 및 집행
별첨 11A 부가가치세 회피에 대한 정보 공개
별첨 12 법원의 구성 및 절차
별첨 13 유보 및 경과조치
별첨 14 주요 개정
별첨 15 폐지
법령의 개정 등 연혁(TABLE OF DERIVATIONS)

| 저자 약력 |

박 정 수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정책학 박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현, 이화여대 행정학 전공/사회과학부 교수

주요국의 소비세제도 Ⅰ

- 부가가치세 -

영국 편

발 행	2019년 12월 27일
발 행 인	김유찬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 화	TEL: (044)414-2114(代)
홈 페 이 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인쇄	디자인 범신
I S B N	978-89-8191-990-0 9432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